

제 3 편

정 치

제1장 군포시의회

제2장 선 거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당

제1장 군포시의회



제1절 지방자치제의 연혁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로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기능은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긴밀한 관련 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로 독재정치를 방어하고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둘째로 지방분권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실현시켜 권력을 분산시킨다. 셋째로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한다. 넷째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중앙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의 정치·행정의 안정성과 독자성을 유지하여 혼란이 파급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생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대사회 성립 이전에도 각 지역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별도로 향촌사회의 자치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중앙정치기구의 보조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향촌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역 사회를 통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치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오랜 연원을 갖고 있지만, 향촌사회 의 자치 기능이 구체화·제도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지방자치는 한말 이후에 근대적 제도로 바뀌게 되지만, 곧바로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형적이고 기만적인 제도로 변질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기, 자유당정권, 유신체제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후 1990년대에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비로소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다.

1. 조선시대

조선 초기부터 향촌사회에는 재지사족(在地士族) 중심으로 조직된 향규(鄉規)나 고대로부터 이어온 농계(洞契)·촌계(村契) 등 향약이 자치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조선 후기 에 이르러 이를 조직은 주현향약(州縣鄉約)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향촌사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향규는 향촌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의 조직으로 일향 약속(一鄉約束)·향헌(鄉憲)·입의(立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향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지역의 유력한 사족들이 입록된 향안(鄉案)이었다. 향안은 재지사족들의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향촌질서의 확립, 수령권에 대한 향권의 보호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재지사족들은 이 향안을 통하여 신분간의 배타성, 지역간의 폐쇄성을 유지하면서 향촌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재지사족들은 향안에 입록된 향원(鄉員) 중에서 좌수(座首)·별감(別監) 등의 향임을 선출하는 한편 향회(鄉會)를 구성하여 수령을 견제하거나 향촌사회의 제반 사항을 운영하는 등 향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선악에 대한 포폄(褒貶) 등을 통한 이들의 노력으로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이 향촌사회에 정착될 수 있었다.

촌계는 이미 오래 전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 자치조직의 하나였다. 향규가 상류층의 향촌지배를 위한 조직이라면, 촌계는 기층민의 상부상조를 위한 마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불문율·관습으로 전승되었지만, 마을의 대소사, 특히 촌제(村祭)·두레·촌회(村會) 등은 모두 촌계로 운영되었다. 촌제는 혼히 동제(洞祭)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연 1~2회 마을 공동으로 산신·서낭신 등 마을의 수호신에 제사를 지내는 연중행사로 특히 제사 후 친목 도모를 위하여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렸다. 두레는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조직으로 집단적인 노

동력을 필요로 할 때 상부상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을 성년남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했으며, 특히 모내기·물대기·김매기·벼베기·타작 등 경작과정에 걸쳐 두레가 동원되었다. 이 밖에 촌계는 제언·교량 등 마을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 산림의 공동 관리, 영농에서의 분쟁 조정, 상선별악(賞善罰惡)을 통한 주민의 교화, 촌회의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무너진 질서와 윤리를 재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하민을 망라한 새로운 향약인 상하합계(上下合契)가 출현하였다. 이는 주로 동계(洞契)·동약(洞約) 등으로 불려지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족의 향규와 하층민의 촌계를 일원화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한 조직이었다. 상하합계는 마을의 공동체적 운영과 상하협력보다는 사족에 대한 하층민의 순종을 강조하는 사족의 지역민 지배기구로서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광범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부농층이 지역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사족들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일부 수령들이 지역사회의 상하 전주민을 의무적으로 참가시켜 운영하는 주현향약이 광범하게 출현하였다. 상하합계가 지역촌을 단위로 한 조직인데 비하여 주현향약은 군현을 단위로 하였다. 주현향약은 자연촌의 동계 등을 하부조직으로 편입시키고, 향교조직을 이용하여 수령이 직접 나서 부세와 지역민의 교화를 관장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향규·촌계·상하합계·주현향약 등 다양한 자치조직이 지역적 특성을 띠고 발전하였으며, 향촌사회는 이러한 자치조직을 통하여 통제·운영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상하합계나 주현향약과 별개로 농민 중심의 민회(民會)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1862년 지방관리와 양반토호의 수탈에 대항하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일어난 광범한 농민항쟁은 바로 이 민회가 기반이었다. 농민들은 민회를 통하여 의사를 모으고 봉기를 실행에 옮겼으며, 봉기 후에도 지방의 행정·실무·활동 지침 등 모든 제반사항을 결정하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전라도의 51개 군·현에 설치한 집강소(執綱所) 역시 민회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2. 개화운동기

1894년 갑오개혁은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들이 요구한 개혁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정부가 구상한 지방제도

개혁안은 우선 군 단위까지는 중앙에서 관리를 과전하고, 면·리는 자치를 실시하되 중앙 통치기구의 행정 집행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향회를 설치했는데, 향회는 리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의 3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리회는 마을(30집 기준)마다 두고 한 집에서 1인씩 참석할 수 있었고, 면회는 리회의 대표자, 군회는 면회의 대표자로 조직하였다. 향회는 각 지역에서 자치조직으로 운영되던 향약을 개편·발전시켜 지방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일을 심의·결정하고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했다. 즉 군 전체에 부과된 세금을 면·리별로 다시 나눈다든가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었다.

면리제의 정비와 향회의 제도화는 종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었다. 면을 정식 행정단위로 하고 양반을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종전의 리를 단위로 한 양반의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또한 양반 계층만 참석할 수 있었던 향회에 신분과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게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신분적 차별을 없앴다. 이는 토호들의 불법적인 농민수탈을 방지하여 국가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한편으로 신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지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향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을 통한 지방제도의 개선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고, 향회도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없는 군수의 종속기관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향회 체제는 일본의 적극적인 내정 간섭과 봉건 지배층인 양반들의 반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갑오개혁이 실패로 끝난 뒤 정부는 광무개혁을 통한 지방제도의 정비를 꾀했다. 지방자체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향장제(鄉長制)의 실시였다. 향장제는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다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향회체제를 변형한 것으로 종전의 향촌사회의 실력자인 좌수를 지방관리로 편입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격과 임면에 대해서는 7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로 신분에 관계없이 명성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군수가 선택하여 지역 주민들이 회의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임무는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무의 처리를 담당하면서 군수를 보좌하고 말단 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었다. 선출방법과 자격 등이 민권과 참정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였지만, 임명 과정과 권한이 전적으로 군수에게 예속되는 등 납퇴(納退)가 성행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한말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통하여 추진된 지방자치제도의 정비는 조선 후기 이래 큰

폐단이었던 지방관과 양반토호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신분철폐와 민권의 확대를 통한 향촌안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또한 을바른 지방자치제의 실현보다는 중앙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에 종속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개편과 논의는 철저하게 일제의 식민지화를 용이하게 하는 침략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회·민의소(民議所)·민단소(民團所)·농무회(農務會) 등이 지방자치제를 표방하고 조직되었다. 이들 조직은 지방관의 불법적인 수탈에 저항하여 남세거부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근대교육을 위한 사립학교·강습소·야학 등을 설립하는 한편 주민들의 부담에 의한 의무학교(義務學校)를 운영하는 등 교육구국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자치제의 일환이었다.

3. 식민지시기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철저한 식민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총독부—도—군—면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고, 특히 조선시대 지방통치의 중심인 군의 기능을 축소하는 반면 면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 10월 종래 면·사(社)·방(坊)·부(部)·단(端)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행정단위를 면으로 통일하고, 이어 1914년 3~4월에는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를 통하여 4,322개를 2,522개 면으로 통·폐합하였다. 면장에는 각 지역의 토착세력 중 친일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어 식민통치의 충실한 협력자로서 일제의 경제적 약탈과 반일의식을 누그러뜨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지방자치 전통은 기저부터 붕괴되어 자연총락인 동·리는 면의 말단 행정단위로 개편되고 향촌자치기구도 무력화되었다.

한편 일제는 1910년대에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허용하였는데, 1914년 부(府)에 부협의회를 둔 것이 그것이다. 부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도장관이 총독의 인가를 받아 조선인과 일본인을 반반씩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닌 부윤의 자문기구기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기구였으며, 더욱이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부에만 설치되어 조선인보다는 일본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였다.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통치방법을 조선인을 회유하고 동화시키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그 중의 하나가 조선인의 독립의지와 열기를 식히기 위한 기만적인 자치기구의 설치였다. 즉 1920년 7월 일제는 조선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자문기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제도 개선에 관한 관계법령을 공포하고 조선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주요 내용은 종래 부에만 설치되었던 자문기구를 도·면에도 확대 실시하여 도평의회와 면협의회를 두고, 부와 지정면(23개) 협의회 회원은 선거로 선출하며 대부분의 면협의회 회원은 관선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평의회 회원은 정원의 2/3를 도내 각 부·면협의회 회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나머지 1/3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직접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920~1929년 동안 3년마다 부와 지정면에서는 협의회 회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보통면 협의회 회원은 관선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자문기구의 확대와 부·지정면에서의 선거 실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없는 기만적인 성격을 띠었다. 즉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수의 부와 지정면에서만 선거로 선출하고 조선인이 90% 이상 거주하는 보통면의 경우에는 관선으로 하여 철저한 민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협의회 회원 또는 선거권자의 자격도 부세 혹은 면세가 연 5원 이상의 납부자로 제한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선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이렇게 일제가 기만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선전하여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꺾고 한편으로 재력과 명망을 갖춘 조선인을 친일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기만적인 자치제도는 1930년대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1920년대에 노·농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민족운동이 계속 고양되자, 조선의 안정적 지배를 위하여 1920년대의 자문기구를 대폭 수정하여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대중투쟁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조선인 지주와 부르주아 등 상층을 식민통치 기구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930년 12월에 공포된 「지방제도 개정안」에서는 도평의회·부협의회·지정면협의회를 각각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로 개편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종래 관선인 면협의회를 민선으로 바꾸었다. 이 개정안 역시 조선인을 회유·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전과 마찬가지로 5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자로 제한하였고, 도회·부회·읍회에 부여한 의결권도 상당한 제한이 가해져 실질적인 의결활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조선인이 대다수인 면협의회는 여전히 자문기구로 존속시켰다.

이와 같이 식민지시기 동안 일제가 조선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체는 대다수 조선인에게 혜택이 없고, 친일파를 회유하는 동시에 일본인 권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만 운영된 기만적인 제도였다.

4. 현 대

1945년 해방으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려야만 하였다. 해방 공간의 미군정 시기에 추진된 지방자치제는 식민지 시기의 기만적인 자치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도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관계가 먼 왜곡되고 불완전한 제도였으며, 그나마 5·16쿠데타로 지방자치 기능은 사실상 중지되었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것은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었던 1980년대였다. 정치적 격변기인 1980년대에 들어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지방자치제의 실현 욕구가 분출되면서 마침내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집권층의 6·29선언을 통하여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9월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곧바로 군정을 실시하고 미군이 들어오기까지 중앙과 지방에서 전개된 모든 정치행위를 일체 불법화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방침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해방 직후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각 지역의 독자적 자치기능을 담당했던 인민위원회였다. 인민위원회는 1945년 말 당시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 지부 13개, 시 지부 31개, 군 지부 220개, 마을 단위 지부 2,282개가 건설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수행하였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탄압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인민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2월 군정 산하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하고 이 입법 위원을 통하여 도 이하 군·면(읍) 등 각급 지방자치 기구와 각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 조직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 군에서 주민 5만 명에 1인의 비율로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들로 도의회를 구성하며 도

의회의 중요 권한으로 도장관 선정권과 개체(改替) 요구권, 예산·결산안 및 심의·결정권 등을 규정하였다.

미군정이 추진한 지방자치제는 민심 수습 차원의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의도는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 관철이었다. 즉 도의회의 중요 권한인 도장관 선출권은 군정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3명 중에서 1인을 선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장관 임명권은 군정에 있었고, 또한 도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리도 유명무실하여 도장관은 중앙집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녹단적 권력 집행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군정은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주민이 뽑은 대의원들로 구성한 도의회가 결정한 모든 사항은 군정이 언제든지 파기하고 백지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골격은 기초 자치단체인 군과 면의 경우에도 똑같으며, 도의 자치조직을 군과 면에 이름만 바꾸어서 그대로 적용한 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이 추진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어 식민지시기의 기만적인 지방자치제를 담습하면서 군정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미군정이 옹호하려고 한 세력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한민당 계열의 인사들이었다. 결국 미군정이 추진한 지방자치는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에 의거하여 1949년 7월 지방자치제 법을 공포하고 곧바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크게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의 중층제를 채택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켰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한 임기 4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집행기관인 시·읍·면장은 각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며,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으로 도에는 군,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 시·읍·면에는 리와 동을 각각 두고, 군수와 구청장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리·동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지방자치제였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을 즉각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버렸다.

지방자치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이었다.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과 국내 치안유지를 구실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자유당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그 타개책으로 전쟁 와중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키로 결정한 것이다. 우

리 나라 최초로 치루어진 지방자치제 선거 결과는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여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자치제 선거를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자유당 정권의 전략이 성공한 셈이었다. 물론 서울시·도지사는 여전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제2대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는 1956년 8월에 실시되었다. 선거에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제법」을 개정하였다. 1956년 2월에 개정된 법안의 골자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제도를 폐지하고 시·읍·면장을 직선제를 선출하는 것 이었는데, 주된 개정 이유는 집권당인 자유당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자 자유당 정권은 직선제로 치루는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정한 지 5개월도 안된 「지방자치제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읍·면장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의 60%나 유임되었다. 선거 결과도 자유당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커져만 갔고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시·읍·면장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위해 지방 행정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2월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정부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급속히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고 그나마 실시되던 지방자치도 파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의 횡포와 독재로 유명무실해졌던 지방자치제는 4·19혁명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시·읍·면장 뿐 아니라 서울시장과 도지사까지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완전 자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자유당 독채체제의 타파에 역점을 두었던 민주당 정권은 지방 행정의 관치적(官治的) 요소의 제거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조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운영상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불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반목과 대립, 중앙정부와 협조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깊게 하고 말았다.

어렵게 출발한 지방자치제는 5·16쿠데타로 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부패와 무능을 혁명적 수단에 의해 일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군부세력은 1961년 5월 「포고령」 4호를 통하여 전국의 각급 의회를 해산시키고, 9월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 행정기관이 대신하게 하고 자치단체장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하였다. 이어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은 모두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사무의 구분을 철폐하였고,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자치는 조국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 유예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로 출범한 제5공화국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7년 전국적인 민주화 항쟁 이후였다. 그 동안 학생들과 일부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민주화 운동이 1987년에 들어 국민 전체로 확산되고 반정부운동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자 정부는 4월에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서 ‘지자체 연내 실시 입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87년 5월에는 정부·여당의 당정회의를 거쳐 1988년 1월에 24개 시·군·구부터 지방자치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전국적인 6월 항쟁으로 번지자 정부는 이른바 ‘6·29 선언’을 통하여 지방의회를 전면 구성하고 지방자치 조기 실시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어 5·16쿠데타 이후 실종되었던 지방자치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제2절 군포시의회

1. 일반현황

1) 연혁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9인의 당선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장이 1991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동년 4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제1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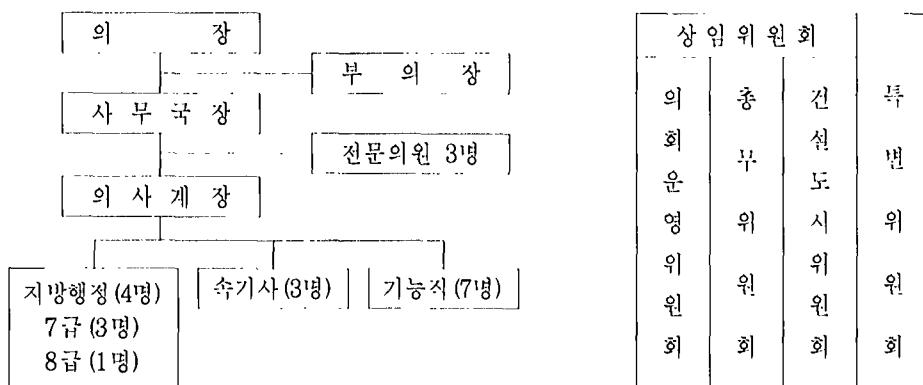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 일원이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 화성군의회 반월면 지역출신의원 1인(김현종)이 군포시의회로 이적하여 1994년 12월 26일부터 10인의 의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시의회 의사당

2) 조직

1991년 4월 15일 개원 당시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1994년 12월 26일부터 의원 1인이 증원되어 총 10인이었다. 의장단은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었다. 한편 의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은 1996년 9월 17일 조례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의원 3명(5급 2명, 6급 1명), 의사계장 1명, 행정직 7급 3명과 8급 1명, 속기사 3명, 기능직 7명 등 총 19명의 직원으로 증원되었다. 당시 의회의 기구표를 정리하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의회기구표

한편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초대 의장단은 의장 유지연, 부의장 송윤석이었다. 임기는 제1대 전반기(제1기라고도 함)인 1991년 4월 15일부터 1993년 4월 14일까지 2년간이었다.

제1대 후반기(제2기)의장단은 의장 유지연, 부의장 이재권이었다. 임기는 1993년 4월 15일부터 1995년 4월 14일까지 역시 2년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789호)에 의해 재임중인 시·군·구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의 의장단은 제1대 후반기 의장단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개원 당시인 1991년 군포시의회 의원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대 군포시의회 의원 현황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의 장	군포1동	유지연 (柳志淵)	1926. 12. 6	
부 의 장	금정동	송윤석 (宋胤錫)	1936. 7. 18	
의 원	군포1동	백남규 (白南圭)	1939. 7. 8	
"	군포2동	김경환 (金庚煥)	1947. 9. 10	
"	당정동	이세종 (李世仲)	1954. 12. 10	여자의원 1명
"	산본1동	이재권 (李載權)	1940. 7. 2	
"	산본1동	배연자 (裔回子)	1940. 8. 3	
"	산본2동	김치년 (金致年)	1940. 5. 1	
"	금정동	노재영 (盧載榮)	1951. 2. 27	

1대 의회는 후반기에 부의장이 송윤석에서 이재권으로 교체되는 변화만 있었다.

제1대 잔여임기 원구성은 19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현재 재직 중인 시·군·구의회의원 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1994년 12월 26일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야동이 군포시로 편입됨에 따라 화성군 의회소속의원 1인이 군포시로 등록되었다. 제1대 잔여임기 원구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1대의회 광경

<표 2> 제1대 잔여임기 원구성 현황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의 장	군포1동	유지연(柳志淵)	1926. 12. 6	
부 의 장	산본1동	이재권(李載權)	1940. 7. 2	
의 원	군포1동	백남규(白南圭)	1939. 7. 8	• 의원수 10명
"	군포2동	김경환(金庚煥)	1947. 9. 10	• 여자의원1명
"	당정동	이세중(李世仲)	1954. 12. 10	
"	산본1동	배연자(裴燕子)	1940. 8. 3	
"	산본2동	김치년(金致年)	1940. 5. 1	
"	금정동	송윤석(宋胤錫)	1936. 7. 18	
"	금정동	노재영(盧載榮)	1951. 2. 27	
"	대야동	김현종(金玄鐘)	1941. 5. 23	

군포시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제2대 군포시의회 의원정수는 20명으로 늘어났고,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선거에서 20인이 당선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하여 1995년 7월 4일 집회가 공고된 후 7월 11일 개원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제2대 군포시의회 의장단은 의장·부의장·의회운영위원회·총무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

등 5명으로 늘어났다. 제2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1995년 7월 11일에서 1997년 1월 10일까지였다. 의장단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제2대 전반기 의장단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의 장	재궁동	노재영(盧載榮)	1951. 2. 27	
부 의 장	산본2동	이원남(李元男)	1938. 10.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금동	김제길(金濟吉)	1952. 9. 5	
총무위원회 위원장	금정동	박윤서(朴允緒)	1942. 3. 17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군포2동	석무훈(石武勳)	1950. 1. 8	

한편 각종 위원회도 조직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김제길, 간사 손영선, 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제2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명단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위 원 장	오금동	김제길(金濟吉)	1952. 9. 5	
간 사	오금동	손영선(孫永善)	1954. 4. 17	
위 원	군포1동	권원혁(權元赫)	1949. 1. 14	
"	군포2동	석무훈(石武勳)	1950. 1. 8	
"	당정동	이세종(李世仲)	1954. 12. 10	
"	산본2동	이원남(李元男)	1938. 10. 2	
"	산본2동	임용순(任龍淳)	1947. 5. 14	
"	금정동	박윤서(朴允緒)	1942. 3. 17	
"	광정동	김주삼(金柱三)	1957. 12. 13	

총무위원회는 위원장 박윤서, 간사 김주삼,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제2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명단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위 원 장	금정동	박윤서(朴允緒)	1942. 3. 17	
간 사	광정동	김주삼(金柱三)	1957. 12. 13	
위 원	군포1동	박윤호(朴潤鎬)	1954. 6. 10	
"	당정동	이세중(李世仲)	1954. 12. 10	
"	산본1동	이재권(李載權)	1940. 7. 2	
"	산본2동	이원남(李元男)	1938. 10. 2	
"	재궁동	김영숙(金玲淑)	1953. 9. 1	
"	오금동	손영선(孫永善)	1954. 4. 17	
"	수리동	방상익(方尚益)	1953. 9. 11	
"	궁내동	권순태(權順泰)	1942. 7. 8	

건설도시위원회는 위원장 석무훈, 간사 권원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제2대 전반기 건설위원회 명단

구 분	지 역 구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위 원 장	군포2동	석무훈(石武勳)	1950. 1. 8	
간 사	군포1동	권원혁(權元赫)	1949. 1. 14	
위 원	산본2동	임용순(任龍淳)	1947. 5. 14	
"	금정동	최진학(崔鎮學)	1957. 3. 25	
"	오금동	김제길(金濟吉)	1952. 9. 5	
"	수리동	장후동(張厚東)	1956. 9. 5	
"	궁내동	유삼종(劉三鐘)	1954. 11. 25	
"	광정동	김진용(金鎮溶)	1935. 2. 15	
"	대야동	송만용(宋萬鏞)	1944. 1. 10	



議長 李載權



副議長 金鎮溶



運營委員長 孫永善



總務委員長 李世仲



建設都市委員長 權順泰



議員 權元赫



議員 朴閔鎬



議員 石武勳



議員 李元男



議員 任龍淳



議員 朴允緒



議員 崔鎮學



議員 金玲淑



議員 盧載榮



議員 金濟吉



議員 方尚益



議員 張厚東



議員 劉三鍾



議員 金柱三



議員 宋萬鏞

한편 회기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도는 46일(본회의-17일, 임시회-29일), 1992년도는 58일(본회의-23일, 임시회-35일), 1993년도는 60일(본회의-21일, 임시회 39일), 1994년도는 80일(본회의-27일, 임시회-53일), 1995년도는 80일(본회의-29일, 임시회-51일), 1996년도는 79일(본회의-23일, 임시회-56일), 1997년도는 80일(본회의-35일, 임시회-45일) 등이었다. 즉 1991년 46일, 1992년 58일에 불과한 회기일수가 1994년 이후 80일로 연장되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점차 활성화됨을 의미한다.

제2대 군포시의회 후반기에는 의장단과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교체가 있었으나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2. 의정활동

1) 개요

1991년도 57건(예산안 4, 결산안 1, 조례안 19, 일반 33), 1992년도 98건(예산안 9, 결산안 1, 조례안 46, 일반 42), 1993년도 94건(예산안 9, 결산안 1, 조례안 38, 일반 46), 1994년도 126건(예산안 9, 결산안 1, 조례안 44, 일반 72), 1995년도 125건(예산안 7, 결산안 1, 조례안 41, 규칙 1, 일반 75), 1996년도 143건(예산



초등학생들의 모의의회 광경

안 9, 결산안 1, 조례안 53, 규칙 2, 일반 78) 등이었다.

이상 처리안건 내역을 보면, 1991년 57건이 점차 증가되면서 1996년도에는 무려 143건으로 그 중 일반안건이 크게 증가되었다. 내용은 주민들의 청원·진정 등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도별 활동

(1) 1991년

제1회 임시회(1991. 4. 15~4. 16. 2일간)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제2회 임시회(1991. 5. 29~5. 31. 3일간)는 「군포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결산심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결정안으로 안양도시계획시설(순복음신학대학) 변경결정안, 안양도시계획시설 도로(2~4) 변경결정안 등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었다.

제3회 임시회(1991. 7. 24~7. 27. 4일간)는 「군포시 지방세 세입포상금 지급조례중 개

정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을 개정하였다. 이어 경기도교육위원회후보자 추천안을 선기·선임하였다.

제4회 임시회(1991. 11. 4~11. 11. 8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 「군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처리하였다. 또 19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0년도 군포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회선임안 등을 가결하였다.

제5회 정기회(1991. 12. 3~12. 30. 28일간)는 「군포시 지방 양여금 특별 회계설치 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안」, 「군포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외 조례안 5건을 가결하였다. 또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1991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91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토론·결의하였다. 특별위원회활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을 행하였다.

(2) 1992년

제6회 임시회(1992. 3. 3~3. 7. 5일간)는 「군포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읍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불균일과 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보건소 수간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결의안으로 군포시 공유재산(소방재산) 무상대부 결정안과 시정에 관한 보고·질문 등이 있었다.

제7회 임시회(1992. 4. 27~4. 28. 2일간)는 「군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군포시 통·반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가결하였다.

제8회 임시회(1992. 7. 14~7. 18. 5일간)는 조례안으로 「19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통합공과금과정사업 특별회계예산안」 등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으로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 금정지하주차장(유료) 민간위탁사용허가 결정안 등이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회 활동

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제9회 임시회(1992. 8. 26~8. 31. 6일간)는 「군포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고·질문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실시하였다. 제10회 임시회(1992. 10. 28~11. 6. 10일간)는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도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도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축허가시 일부토지의 지목변경(도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등이 있었다. 특별위원회활동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다.

제11회 정기회(1992. 11. 25~12. 15. 21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군포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가결하였다. 예산안으로 19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회계 예산안, 199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9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이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을 실시하였다.

(3) 1993년

제12회 임시회(1993. 1. 11. 1일간)에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하였다. 제13회 임시회(1993. 3. 9~3. 13. 5일간)는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가결하였다. 결정안으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안과 규정안으로 군포시 의회기 및 의원뱃지 등에 관한 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보고안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었다.

제14회 임시회(1993. 4. 13. 1일간)는 제1대 군포시의회 제2기 의장단선거를 실시하였다. 제15회 임시회(1993. 5. 25~6. 3. 10일간)는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외 6건을 가결하였다. 결의안으로 목적 세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보고·질문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하였다.

제16회 임시회(1993. 7. 13~7. 19. 7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의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예산안으로 19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과 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가결하였다. 결의 및 결정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산본신도시건설상의 문제점 시정요구결의안 등이 있었다. 제17회 임시회(1993. 8. 31~9. 1. 2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였다. 또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안과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집사위원회선임안 등을 추천·선임하였다.

제18회 임시회(1993. 9. 29 1일)는 산본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건설계획 농의안을 가결 했다. 제19회 임시회(1993. 10. 18~10. 19. 2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가결하였다. 또한 군포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가결하였다. 제20회 임시회(1993. 11. 16. 1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토의·가결하였다.

제21회 정기회(1993. 11. 25~12. 24. 30일간)는 「군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도로접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9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예산·결산안으로 199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99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을 가결하였다. 기타안건으로 1993년도 행정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등과 특별위원회활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을 가졌다.

(4) 1994년

제22회 임시회(1994. 2. 17~2. 18. 2일간)는 「군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 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결정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안양·군포·의왕 3개 시통합반 대결의안과 1994년도 시정설명 보고 등을 실시하였다. 제23회 임시회(1994. 4. 15~4. 18. 4일간)는 「군포시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군포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군포시 의회방청규정안 등 규칙·규정안을 가결하였고, 당동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현실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제24회 임시회(1994. 6. 10~6. 24. 1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19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제1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결정안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였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군포시 직제신설건의안이 제안되었다.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있었다. 제25회 임시회(1994. 7. 11~7. 18. 8일간)는 「군포시 행정운영 동의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하였다. 보고·질문으로 1994년 방재계획추진상황설명, 국도 47호선 확장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설명, 당동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설명 등과기타안건으로 방재취약지동 현지답사계획서 작성의 건,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채택하였다.

제26회 임시회(1994. 9. 13~9. 16. 4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 외 3건을 가결하였다. 또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선임하였다. 제27회 임시회(1994. 9. 26~9. 28. 3일간)는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가결시켰다. 보고·질문으로 안양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설명, 당리지하보도설치공사 설명 등과 기타 안건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이 있었다.

제28회 임시회(1994. 10. 15~10. 20. 6일간)는 「군포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가결시켰다. 건축허가지번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설명의 건인 보고·질문과 기타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시·군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 등이 있었다.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제29회 임시회(1994. 11. 19~11. 21. 3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을 가결하였다. 군포시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과 건축허가지번변경에 따른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추진상황 청취의 건에 관한 보고·청취가 있었다. 또 기타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있었다.

제30회 정기회(1994. 11. 25~12. 29. 35일간)는 「군포시 결산검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농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조례안」, 「군포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1건을 가결하였다. 예산·결정안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9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제2회 통합공과금과정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이 있었다. 또 산본쓰레기소각시설 최저가 낙찰에 따른 대체수립축구 결의안과 기타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결정안 등을 채택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있었다.

(5) 1995년

제31회 임시회(1995. 2. 21~2. 25. 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전자 계획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을 가결하였다. 또 199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질문이 있었다. 제32회 임시회(1995. 3. 22 ~3. 24. 3일간)는 「군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등을 심의·가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군포·안양시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건 등이 있었다.

제33회 임시회(1995. 4. 14. 1일간)는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 건을 선거·선임하였다. 제34회 임시회(1995. 5. 15.~5. 22. 8일간)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예산안으로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



시정질의 광경

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기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병행되었다.

제35회 임시회(1995. 6. 9. 1일간)는 「군포시 여성회관설치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또 기타 안건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였다. 제36회 임시회(1995. 7. 11.~7. 14. 4일간)는 「군포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의장선거의 건, 부의장선거의 건, 상임위원선임의 건, 상임위원장선거의 건, 운영위원회장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제37회 임시회(1995. 8. 10. 1일간)는 시정에 관한 질문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안을 처리하였다. 제38회 임시회(1995. 8. 28.~9. 2. 6일간)는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회관운영조례안」 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보고·질문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정업무보고, 기타 안건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과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등을 가결하였다.

제39회 임시회(1995. 10. 16.~10. 27. 12일간)는 「군포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결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40회 임시회(1995. 11. 15.~11. 18. 4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지방공부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등을 통과시켰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건의안과 산본신시가지 도시기반시설물의 완벽한 인수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되었고, 기타 안건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변경안과 위원장선임의 건 외 2건 등이 있었다. 제41회 정기회(1995. 11. 25.~12. 29. 3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을 토의·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건설에 관한 건의안, 그리고 199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보고·질문으로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과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 등이 있었다.

(6) 1996년

제42회 임시회(1996. 1. 17.~1. 18. 2일간)는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재검토건의안을 토의하였다. 제43회 임시회(1996. 2. 12.~2. 15. 4일간)는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 등의 조례안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사죄 촉구결의안 등을 가결하였다.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질문과 기타 안건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시정발전과제연구계획안 외 1건을 심의하였다.

제44회 임시회(1996. 5. 8. 1일간)는 안양시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을 논의하였다. 제45회 임시회(1996. 5. 29.~5. 31. 3일간)는 학교급식 조기확대실시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화충을 위한 건의안」 외 2건,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 등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기타 안건으로 삼성미도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충수제한 등에 관한 청원과 안양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 외 1건 등이 있었다.

제46회 임시회(1996. 6. 17.~7. 1. 1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명예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 등을 가결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서용·안양시장의 안양·군

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 촉구결의안 등 결의안과 예산안으로 199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였다. 또 시정에 관한 질문·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995년도 결산심사위원회선임의 건 외 2건 등이 있었다.

제47회 임시회(1996. 8. 28.~9. 4. 8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 외 6건 등을 가결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996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였다. 제48회 임시회(1996. 9. 6. 1일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산본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소명자료제출요구 결의안,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 건 등을 심의·통과시켰다.

제49회 임시회(1996. 10. 26.~11. 5. 11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군포시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군포시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안」 외 6건 등을 가결시켰다.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으로 산본2동 주공11 단지와 주공1단지 사이의 도로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 외 3건 등이 있었다. 제50회 정기회(1996. 11. 25.~12. 28. 34일간)는 「군포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군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결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및 소각방식에 대한 검토건의안 등을 가결하는 한편 예산안인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다. 또 시정에 관한 질문·보고와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취급하였다.

(7) 1997년

제51회 임시회(1997. 1. 7.~1. 9. 3일간)는 기타 안건인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상임위



제54회 임시회의 광경

원선임의 건과 상임위원장선거, 운영위원회선임의 건, 운영위원장선거 등을 토의하였다. 제52회 임시회(1997. 2. 14.~2. 18. 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회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을 가결시켰다. 보고·질문으로 1997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

문 등이 있었고, 기타 안건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취급하였다.

제53회 임시회(1997. 4. 23.~5. 3. 11일간)는 조례안인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 등을 가결하였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있었다. 이외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시장출석요구의 건 외 1건 등이 논의되었다. 제54회 임시회(1997. 7. 12.~7. 18. 7일간)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 등의 조례안과 쓰레기소각장의 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 변경결의안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출석요구의 건 등도 부차적으로 토의되었다.

제55회 임시회(1997. 9. 10.~9. 24. 1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 「군포시 가두판매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외 3건 등을 가결하였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등도 심의되었다. 56회 임시회(1997. 11. 1.~11. 4. 4일간)는 「군포시 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 운영조례안」,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 등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제의의 건 등의 토의·결정되었다.

제57회 정기회(1997. 11. 25.~12. 29. 35일간)는 조례안으로 「군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군포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1건 등과 결산안(건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예·결산안인 199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등도 비중있게 심의·가결되었다. 또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시장출석요구의 건 외 10건 등도 있었다.

제3절 의원연수

의원 연수는 자질 향상과 의원 직무수행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연수를 하되 본래의 취지대로 열심히 하느냐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해외연수는 사전에 그 나라의 역사, 민족성, 사회여건 등을 충분히 알고 가야하며 연수 후에는 알찬 내용의 보고서 제출



해외 시찰·연수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선진국의 모범적인 사례는 군포시의 발전에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1991년 군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실시된 국내연수·세미나·시찰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참고로 6개 시의회 합동연수는 안양·안산·군포·시흥·의왕·과천시이며, 7개 시의회 합동연수는 안양·안산·군포·광명·시흥·의왕·과천시 등이다.

〈표 7〉 국내연수 현황

일자	주최	장소	참석인원	연수내용
1995. 8. 24~8. 25	국회의정연수원 (서울여의원)	국회의정연수원 (서울여의원)	16인 (초선의원)	의회운영, 예산결산심사, 국회의정,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심사
1995. 9. 4	6개 시의회 합동연수	현대사회연구소 (성남)	14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제도운영에 관한 특강
1995. 11. 8~11. 11	한국산업기술원	청주시, 대구시 경주시	9인	청주시의회, 청주시청, 청주시상 수 도사업소 방문전학, 대구성서소개 장동 방문전학, 전북지방의회의원 세미나참석(경주시)
1995. 8. 24~8. 25	국회의정연수원 (성남)	국회의정연수원 (성남)	16인 (초선의원)	의회운영, 예산결산심사, 국회의정,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심사
1995. 9. 4	6개 시의회 합동연수	현대사회연구소 (성남)	14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제도운영에 관한 특강
1995. 11. 8~11. 11	한국산업기술원	청주시, 대구시 경주시	9인	청주시의회, 청주시청, 청주시상 수 도사업소 방문전학, 대구성서소개 장동 방문 전학, 전북지방의회의원 세미나 참석(경주시)
1996. 1. 23~1. 27	한국산업기술원	제주도, 서귀포	14인	주민민족형 지방행정서비스 혁명, 격변기 한국지방자치의 개혁과 발 전방안, 지방의회의정활동 효과적 운영,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문제 점과 개선사례
1996. 2. 9	7개시 의회의원 합동세미나	안양성결대학교	15인	조례안 발의 및 심사기법
1996. 6. 3~6. 5	통일연수원	강북 수유 6동	10인	통일정책, 통일환경, 북한실태 이념 문제 등과 관련 각종 세미나식 강좌, 전문가초청 특강
1996. 10. 23~10. 25	지방의회의원 세미나	제주도 제주시	15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단 체의 경영혁신전략, 지방의회의 예 산·결산심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1997. 2. 26~2. 28	지방의회의원 세미나	목포 신라 비치호텔	12인	지방자치와 세계화 전략, 지방행정 의 과제와 발전방안, 사전선거운동 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것의 함께
1997. 5. 26~5. 29	자체계획	춘천·원주·속 초·강릉시의회	4인	타 시의회 전학
1997. 9. 3~9. 4	지방의회의원 세미나	경주콩코드호텔	15인	예산안·결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
1997. 9. 5~9. 6	타 시·군의회 방문	울릉군의회 동해시의회	15인	울릉군의회, 동해시의회 방문

해외연수는 1995년에 9박 10일(10명), 1996년에 9박 10일(8명), 1997년에 4박 5일(1명)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횟수이다. 선진국의 발전된 지방자치 현황연수는 초보 단계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좋은 현장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해외연수 현황

일자	주최	장소	참석인원	연수내용
1995. 11. 4 ~11. 13	유럽4개국 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0인	영국의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견학, 프랑스 하수처리장과 라데팡스(신도시) 견학, 독일 베를린시청, 시의회 방문, 이탈리아 콜로세움, 성베드로성당 등 견학
1996. 4. 16 ~4. 25	유럽5개국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8인	프랑스: 파리시 5구의회와 라데팡스 신도시 견학,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각장
1997. 5. 12 ~5. 16	안양시의회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1인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윤기영〉

제2장 선 거

제1절 개 요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는 등 국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통치조직이 국민에 의해 형성되고 국민의 자유·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이 행사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선거를 통하여 직·간접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7월 17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중심제, 국회단원제, 기본권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 계획경제 등이었고, 대통령선거는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이었다. 헌법은 현재까지 9차례 걸쳐 개정되었으며, 제5차 개헌부터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개정과정상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빈도가 잦다는 것과 주요 내용이 집권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대부분 면죄적·위헌적 방법에 의한 개정이었으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방식인 국민표결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써 국민이 개헌을 확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표 1〉 대통령선거 제도 변천 내용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선 거 방 법	비 고
초대	이승만	1948. 7.20~1952. 8.14	국회내 간선	
2대	이승만	1952. 8.15~1956. 8.14	국민직선	
3대	이승만	1956. 8.15~1960. 4.27	"	
4대	이승만	3.15 선거무효	"	
권한대행	허 정	1960. 4.27~1960. 6.16		이승만 하야
권한대행	곽상훈	1960. 6.17~1960. 6.22		헌법개정으로 국회의장
"	허 정	1960. 6.22~1960. 8.11		곽의장 사퇴
4대	윤보선	1960. 8.12~1962. 3.24	민·참의원에서 간선	
권한대행	박정희	1962. 3.24~1963.12.16		윤대통령 하야
5대	박정희	1963.12.17~1967. 6.30	국민직선	
6대	박정희	1967. 7. 1~1971. 7. 2	"	
7대	박정희	1971. 3. 3~1972.12.26	"	
8대	박정희	1972.12.27~1978.12.26	통일국민회의에서 간선	
9대	박정희	1978.12.27~1979.10.26	"	
권한대행	최규하	1979.10.26~1979.12. 5		박정희 사망
10대	최규하	1979.12. 6~1980. 8.16	통일국민회의에서 간선	
권한대행	박종훈	1980. 8.16~1980. 9. 1		최대통령 하야
11대	전두환	1980. 9. 1~1981. 2.24	통일국민회의에서 간선	
12대	전두환	1981. 2.25~1988. 2.24	선거인단에서 간선	
13대	노태우	1988. 2.25~1993. 2.24	국민직선	
14대	김영삼	1993. 2.25~1998. 2.24	"	
15대	김대중	1998. 2.25~현 재	"	

자료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335면.

대통령선거는 모두 14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거방식을 빈번하게 개정하여 국민직접선거 8회와 간접선거 6회로 실시되었다. 부통령선거는 모두 5회에 걸쳐 대통령선거와 병행되었다. 그 중 3회는 직접선거 방식에 의해 선출되었다. 두 선거는 집권여당이 다양한 지원을 동원한 반면 야당들은 지극히 제한된 지원만을 동원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여당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는 등 안정적인 위치를 누려 왔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치 지망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구조로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 지망생들의 정당활동이 왜곡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5차례나 개정되었다. 빈번하게 개정된 이유는 1961년부터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전까지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권위주의 정치세력이 정권 창출과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는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선거의 특징은 후보자 선정에 관이 개입한 점이다. 제5공화국에서 실시한 대통령선거인단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와 유사하였다.

지방의원 선거제도는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지 3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시·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각각 4월 24일과 7월 8일에 개원하였다. 국민의 주권행사는 그들의 대표자를 올바른 선출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제와 나아가 민주주의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해방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와 경기도 그리고 전국의 평균을 제시하여 군포시와 상호 비교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대통령선거

1. 초 대

제헌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어 198명(제주도 2명 제외)의 의원들이 선출함으로써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시발점이었다. 제헌국회의원들은 임기 2년으로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다. 국회는 이승만을 최초의 국회의장으로 그리고 부의장에는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출하는 등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같은해

7월 12일에는 건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7일에는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7월 17일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는 7월 20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무기명 투표에 의해 각각 선출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장인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선거의 사회를 볼 수 없었다.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신익희부회장의 사회로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다.

초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 결과는 198명 중 180표를 얻은 이승만 후보가 1차투표에서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대 대통령선거 결과

재적 의원수	재석 의원수	투표자수			기권 자수	투표율 (%)	유효투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			
		유효	무효	계				이승만	김구	안재홍	계
198	196	195	1	196	2	99.0	99.5	180	13	2	195

서재필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므로 무효됨.

이에 따라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1948년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취임하였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국내와 전세계에 선포되어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임을 알리게 되었다.

2. 제2대

이승만은 집권 초부터 정권 연장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내·외로 분파주의화된 자유당세력을 통합하고 민주국민당을 위시한 반정부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초대 대통령 임기만료를 8개월 앞둔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표결하였으나, 재석의원 163명 중 가 19표, 부 14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다. 당시 원내 세력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원내 세력분포 현황

정당(파)별	자유당	민주국민당	민우회	무소속	계
인원수	93	39	25	18	17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3면.

당시 표결 결과와 〈표 3〉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자유당 93명 중 절대다수가 개헌안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가 이곳나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로 개헌 파동을 맞았다. 개헌안을 놓고 여·야간의 대립 격화와 자유당 내의 대립은 결국 국회와 정부간의 정면충돌을 야기하였으며, 끝내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자 국회와 정부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야당에서 1952년 4월 17일 제출한 개헌안은 내각책임제로 원내 자유당 93인 중 48인, 민주국민당 39인, 민우회 25인 중 21인, 무소속 26인 중 15인의 찬성을 얻어 과상훈의원 외 122인의 연서로써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은 야당의 개헌안에 맞서 1952년 1월 18일 부결된 정부측 개헌안을 나소 수정하여 1952년 5월 14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사당 안 연금, 국회의원 소환운동, 민족자결단·백골단 등을 놓원한 광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회해산을 주장하면서 끝내는 신이희 국회의장태을 노위·위협까지 행하는 등 개헌파동을 일으켰다.

당시 국무총리인 장태상은 대통령직선제, 상하양원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과 면직, 국무원에 대한 국회불신임결의 등 4개 원칙에 의한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5명 중 166명이 출석하여 찬성 163표, 기권 3표로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는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이시영·조봉암·신흥우 등 4인이 출마하였으며, 당선자는 자유당의 이승만이었다.

군포시(시흥군 남면)의 투표율은 전국비율보다 8.5%가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유당의 이승만 지지도는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88.3%였다. 선거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제2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43,128	34,837	8,791	1,334	33,003
경기도	912,299	775,808	136,491	26,072	749,736
전국	8,259,428	7,275,883	983,545	255,199	7,020,684
비율(%)	시흥군(남면)	79.6	20.4	3.9	96.1
	경기도	85.0	15.0	3.4	96.6
	전국	88.1	11.9	3.5	96.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5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 선거상황』, 30면.

〈표 5〉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분 지역	유효투표총수	이승만(자유당)		조봉암(무소속)		이시영(무소속)		신홍우(무소속)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33,003	29,139	88.3	1,744	5.3	1,213	3.7	910	2.7
경기도	749,736	657,174	87.7	44,967	6	34,704	4.6	12,891	1.7
전국	7,020,684	5,238,769	74.6	797,504	11.4	764,715	10.9	219,696	3.1

3. 제3대

1956년 5월 15일에 실시한 제3대 대통령선거는 제2대 선거에 적용하였던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1954년 9월 6일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대통령의 종신연임제와 일부 헌법조항의 국민투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사사오입개헌’으로 가결·선포된 후 처음 실시한 선거였다.

대통령후보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 등 3명이 출마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의 신익희가 도중에 사망함에 따라 선거정국은 급변하여 2명이 경쟁하였다.

선거결과 94.4%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지만, 유효투표율은 투표자 총수의 79.5%로

지극히 낫았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입후보자 고 신의희에 대한 추모표에 150만여 표가 몰린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승만후보는 유효투표율 70%를 얻어 당선되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전국평균보다 9.3%의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선거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제3대 대통령선거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42,325	40,122	2,203	11,271	28,851
경기도	1,119,859	1,058,971	60,888	271,064	787,907
전 국	9,606,870	9,067,063	539,807	1,856,818	7,210,245
비율(%)	시흥군(남면)	94.8	5.2	28.1	71.9
	경 기 도	94.6	5.4	25.6	74.4
	전 국	94.4	5.6	20.5	79.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9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 선거상황」, 54~55면.

〈표 7〉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 표총수	이승만(자유당)		조봉암(무소속)		비 고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28,851	22,889	79.3	5,962	20.7	
경기도	787,907	607,757	77.1	180,150	22.9	
전 국	7,210,245	5,046,437	70.0	2,163,808	30.0	

4. 제4대

제4대 대통령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후보와 이기봉 부통령후보로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대통령후보와 장면 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은 대통령후보에 장택상과 부통령후보에 박기출을 그리고 민족주

의 민주사회당의 전진한과 전진보당부위원장인 김달호도 대통령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입후보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통일당 당수인 김준연과 임영신만이 각각 부통령에 입후보하였다.

자유당은 1959년 하반기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신·구파의 당주도권 싸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기선거를 기도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을 통한 선거운동망을 조직하고, 이를 전국경찰로 감시·감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4대 대통령선거를 1960년 3월 15일 시행을 공고하였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어렵게 대통령후보에 오른 조병옥이 2월 15일 급사하여 이승만은 단독후보로 쉽게 당선되었다. 국회는 당선자를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기붕을 당선·공표하였다.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거무효를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부정선거 반대 시위 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4·19혁명으로 진전되었다. 자유당은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과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취소한다면 정국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5일에는 교수들 까지 시위에 합세하였다. 결국 이승만과 자유당 세력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에 항복하여 26일에 하야의 뜻을 밝히고, 27일에 대통령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6일 제4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개헌과 총선거로 시국수습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5월 2일에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선거는 지금까지 선거 중 투표율이 97%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우리 군포시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0.2%가 높게 나타났다. 선거결과는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제4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지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51,379	49,956	1,424	6,233	43,723
경기도	1,343,318	1,308,328	34,990	168,401	1,139,927
전 국	11,196,490	10,862,272	334,218	1,228,896	9,633,376
비율(%)	남면(시흥군)	97.2	2.8	12.5	87.5
	경기도	97.4	2.6	12.9	87.1
	전 국	97.0	3.0	11.3	88.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44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 선거상황』, 78면.

〈표 9〉 후보자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유효투표총수	이승만(자유당)	
			득 표 수	비 율
시흥군(남면)	51,379	43,723	43,723	87.5
경기도	1,343,318	1,139,927	1,139,927	87.1
전 국	11,196,490	9,633,376	8,544,804	88.7

제3차 개헌헌법에 의해 참의원 및 민의원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하였으며, 3월 15일 실시된 선거는 국회에서 무효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제4대 대통령재선거가 된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60년 8월 12일 참의원 및 민의원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263명 중 259명이 출석하여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을 각각 선출하였다. 선거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제4대 대통령재선거 득표현황

후보명	윤보선	백나준	김도연	김병로	김창숙	변영태	허 정
득표수	208	3	2	1	29	3	2
후보명	김시현	라용균	유옥우	박순천	이철승	무 효	계
득표수	1	1	1	1	1	6	25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48면

5. 제5대

허정 과도내각은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선거와 초대 참의원선거를 마무리한 후 8월 8일에 개원하였다. 허정내각은 약 4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현정사에 최초로 내각제를 채택하여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새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의 병폐를 고쳐보고자 내각책임제를 서구식제도 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인 민주당 정권은 내각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여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과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박정희소장을 중심으로 군부세력은 이른바 무능력한 장면내각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재건최고위원회 밭족과 더불어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장면내각이 5월 18일 총사퇴함에 따라 제2공화국은 처음으로 도입된 내각책임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9개월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는 1962년 3월 16일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1968년 8월 15일까지 금지하는 「정치활동금지법」을 제정·공포하여 4,363명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통령중심제와 국회단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1962년 11월 5일에 발표·공고하였다. 개정헌법은 12월 17일 제1차 국민투표에 의해 가결·확정되어 12월 26일 공포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법」의 개정과 함께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시행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별 입후보자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민정당 윤보선, 국민당 허정, 자유민주당 송요찬, 추풍회 오재영, 민정회 변태영, 신홍당 장이석 등 7명이었으나, 송요찬과 허정이 중도 사퇴하여 5인이 각축을 펼쳤다. 국민들은 박정희후보의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에서 제5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이것이 제3공화국의 출발이었다.

선거의 특징은 군인신분인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민주당을 붕괴시키고 제1차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한 후 합법화시키면서 정치에 진입한 점이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였으며, 기권율이 사상최고인 15%를 나타냈다. 우리 군포시는 기권율이 16.4%로 전국평균 기권율보다 무려 1.4%나 높게 나타났다. 선거결과 박정희후보는 윤보선후보보다 1.5%가 많은 46.6%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윤보선후보가 박정희후보의 30.9%보다 28.1%나 많은 59%를 더 얻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윤보선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선거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11〉 제5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53,214	44,486	8,728	4,168	40,318
경기도	1,492,207	1,281,166	211,041	117,319	1,163,847
전 국	12,985,015	11,036,175	1,948,840	954,977	10,081,198
비 율(%)					
남면(시흥군)	83.6		16.4	9.4	90.6
경 기 도		85.9	14.1	9.2	90.8
전 국		85.0	15.0	8.7	91.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52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 선거상황」, 1996, 100~101면.

〈표 12〉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 표총수	득 표 수				
		장이석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변영태
시흥군(남면)	40,318	904	12,398	2,076	23,793	1,147
경 기 도	1,163,847	27,554	384,764	54,770	661,984	34,775
전 국	10,081,198	198,837	4,702,640	408,664	4,546,614	224,443
비 율(%)						
시흥군(남면)	2.2	30.9	5.1	59.0	2.8	
경 기 도	2.4	33.1	4.7	56.9	3.0	
전 국	2.0	46.6	4.1	45.1	2.2	

6. 제6대

1966년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에 재선됨에 따라 조직의 확대·정비에着手하여 150만 당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통·반장의 정치활동 강요와 청년봉사대 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원내 제1야당인 민중당은 부정선거 예비행위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관련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선거에 임박해 선거관계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으나, 월남파전 국군의 투표권 행사가 문제가 되어 부재자투표제의 신설이 논의됨에 따라 1966년 12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선거관련법들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967년 5월 3일에 제6대 대통령선거는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입후보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중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이 출마하였으나 서민호가 도중 사퇴하여 6명의 후보가 대결을 하였다. 선거 결과 박정희후보가 51.4%, 윤보선후보가 40.9%로 무려 10.5%라는 큰 차이로 박정희후보가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제5대 선거시 윤보선후보가 박정희후보보다 28.1%나 앞섰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14.6%로 득표율 차이가 많이 좁혀졌으며 경기도의 결과도 윤보선후보의 지지가 박정희후보보다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다. 대통령선거 결과는 <표13>, <표 14>와 같다.

<표 13> 제6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67,642	51,252	16,390	2,826	48,426
경기도	1,601,160	1,355,758	245,402	73,152	1,282,606
전 국	18,935,093	11,645,215	2,289,878	586,494	11,058,721
비율(%)	시흥군(남면)	75.8	24.2	5.5	94.5
	경 기 도	84.7	15.3	5.4	94.6
	전 국	83.6	16.4	5.0	95.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57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 선거상황』, 132~133면.

<표 14>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 표총수	득 표 수					
		이세진 (정의당)	전진한 (한국독립당)	윤보선 (신민당)	김준연 (민중당)	박정희 (민주공화당)	오재영 (통한당)
시흥군(남면)	48,426	453	876	26,130	924	19,077	966
경기도	1,282,606	11,029	25,306	674,964	23,248	525,676	22,383
전 국	11,058,721	98,433	232,179	4,526,541	248,369	5,688,666	264,533
비율(%)	시흥군(남면)	0.9	1.8	54.0	1.9	39.4	2.0
	경 기 도	0.9	2.0	52.6	1.8	41.0	1.7
	전 국	0.9	2.1	40.9	2.3	51.4	2.4

7. 제7대

제3공화국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대한 의무감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연속되었다. 1971년의 양대 선거에서 여당은 3기 집권과 야당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서로간에 정략적으로 매우 분주하였다. 이 기간 중에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강조하면서 행정부의 기능은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관료들의 부패는 고질적인 문제였고, 1971년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관주도 경제발전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제도의 발전은 퇴보의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민주공화당은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9명을 당선시켜 개헌선까지 확보하였다. 이어 여당은 1969년 9월 14일 새벽 국회 별관에서 비밀리에 3선개헌안을 변칙 처리하여 박정희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개정을 하는 등 장기집권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쳤다. 신민당은 3선개헌 후 국회 등원을 6개월여 동안 거부하였으나, 유진산 당수는 원내투쟁으로 전환하여 1970년 5월 11일 등원과 동시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와 함께 김대중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1971년 4월 27일의 제7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김대중, 국민당의 박기출, 민중당의 성보경, 자민당의 이종윤, 정의당의 진복기, 통일사회당의 김철 등이 입후보하였다. 선거도중 성보경, 김철이 사퇴하여 5명이 경합하였다. 제7대 대통령선거는 박정희후보와 김대중후보간의 격돌한 선거였다.

우리 군포시의 투표율은 전국 비율보다 3.5%, 경기도 비율보다는 4.8%가 저조하였다. 선거에서 박정희후보는 53.1%, 김대중은 45.3%의 지지를 얻어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김대중후보가 박정희후보보다 앞선 지지를 얻었다. 선거결과는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5〉 제7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5,518	4,212	1,306	135	4,077
경기도	1,796,979	1,457,087	339,892	49,208	1,407,879
전 국	15,552,236	12,417,824	3,134,412	494,606	11,923,218
비율(%)	시흥군(남면)	76.3	23.7	3.2	96.8
	경 기 도	81.1	18.9	3.4	96.6
	전 국	79.8	20.2	4.0	96.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63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 선거상황』, 186~187면.

〈표 16〉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 표총수	득 표 수				
		박정희 (민주공화당)	김대중 (신민당)	박기출 (국민당)	이종윤 (자민당)	진복기 (정의당)
시흥군(남면)	4,077	1,856	2,164	19	4	34
경기도	1,407,879	687,985	696,582	6,547	2,995	13,770
전 국	11,923,218	6,342,828	5,395,900	43,753	17,823	122,914
비율(%)	시흥군(남면)	45.5	53.1	0.5	0.1	0.8
	경 기 도	48.9	49.5	0.4	0.2	1.0
	전 국	53.2	45.3	0.4	0.1	1.0

8. 제8대

박정희대통령은 3선 개헌에 성공한 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보다 7.9%차로 당선됨에 따라 권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제3차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을 확정하였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2년 초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고, 7월에는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이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남북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

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박정희의 선거공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19시에 국회를 해산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수행하고 또한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헌법에 따라 동년 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정치일정은 11월 21일 정부일정대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군의 힘에 의해 정당정치를 중단시켰으며, 계엄령을 펴서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헌법 파괴였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단독출마한 박정희후보가 재적대의원 2,359명 중 99.9%의 지지를 얻어 유신헌법 하에서 최초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제8대 대통령선거 결과

대의원 정 수	재적대 의원수	투표자 수			기권 수	투표율 (%)	비고
		찬성	무효	개			
2,359	2,359	2,357	2	2,359	0	1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91면.

9. 제9대

제9대 대통령선거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되었다. 대의원선거는 1978년 5월 18일 실시되어 정원 2,583명으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는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명분론과 현실론이 있었다. 명분론은 정당의 최종목표는 집권에 있으니 출마해야 한다는 논리였고, 현실론은 야당인사가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과는 자명하므로 유신체제에 대한 거부표시로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개헌청원운동 등이 벌어지고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운동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긴급조치 9호」로 대응하면서 정상적인 헌정질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인 박정희는 단독으로 출마하여 1978년 7월 6일 장충체육관에서 토론없이 비밀투표로 2,557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유신 2기를 출범시켰다. 선거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제9대 대통령선거 결과

대의원 정 수	사망·사퇴	재적대 의원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
			찬 성	무 효	계		
2,583	2	2,581	2,577	1	2,578	3	99.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선거 상황』, 195면.

10. 제10대

박정희는 집권 18년만인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시해됨으로써 유신의 종말을 고했다. 박정희는 유신을 통하여 독재체제를 구축한 후 체제를 비판하거나 체제에 반대하는 언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조치를 통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등 철권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로 인해 붕괴되며 독재자의 말로는 허망하다는 것을 남겨주었다.

18년간의 장기집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헌법규정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규하는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시일 안에 국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라는 것이었다. 최규하대통령 취임 후 1979년 12월 12일에는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가 체포되는 군의 하극상이 초래되었고,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등 많은 소요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5월 31일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중장이 임명되었다.

최규하대통령은 8월 16일 재임 8개월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함에 따라 많은 정치적 여운을 남게 하였다. 제10대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1979년 12월 6일 실시되었으며, 이것은 10월 유신의 꼬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는 최규하 단일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선거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제10대 대통령선거 결과

대의원 정 수	사퇴사망 23	재적대 의원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11	투표율 (%) 99.6
			찬 성	무 효	계		
2,583		2,560	2,465	84	2,54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99면.

11. 제11대

최규하대통령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신현화를 부총리로 내세워 안개 속의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에 의한 12·12사태를 맞아 결국은 꼭두가시 대통령이 되었다. 재임 중에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혼미한 정국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었다. 최규하대통령은 전두환 등 군부실세들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재임기간 중인 1980년 6월 5일 전두환을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임명함으로써 전두환은 이 나라의 초미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동년 8월 13일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는 정계은퇴 선언과 3일 후인 8월 16일에는 최규하도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군부 실세들은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보궐선거로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선거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제11대 대통령선거 결과

대의원 정 수	사퇴 및 사망 43	재적대 의원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15	투표율 (%) 99.4
			찬 성	무 효	계		
2,583		2,540	2,524	1	2,52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선거상황」, 203면.

12. 제12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1980년 9월 29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동 현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명칭만을 바꾼 선거인단선거를 1981년 2월 11일 실시하여 5,278명의 선거인을 선출하였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는 2월 25일에 실시하여 전두환이 7년 단임으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3월 3일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합법성과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즉 위헌성과 정통성의 결여, 헌법 일부 규정의 비민주성과 국정운영상의 도덕성의 결여 등으로 민주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통치이념으로 표방하는 한편 특히 정치풍토 쇄신과 정당의 체질개선 그리고 부정부패의 규제와 사회정화 등에 노력하였다. 또한 올림픽을 유치하여 국위선양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선거결과는 전두환이 4,755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제12대 대통령선거 결과

구분 지역	대통령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투표율 (%)
			김종칠(국)	김의택(민)	유치송(한)	전두환(정)		
제6선거구	93	93	2	1	9	81	100	100
경기도	670	670	4	3	43	620	100	100
전국	5,277	5,270	85	26	404	4,755	0.01	99.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대통령선거상황』, 210면.

: (국)한국국민당, (민)민권당, (한)민주한국당, (정)민주정의당, 제6선거구(시흥·부천·안양·옹진)

13. 제13대

제5공화국 헌법은 제정절차상 비민주적 요소가 많았다. 대통령선거도 헌법내용에서 대표성이 결여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와 비민주적 조항 등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에서 물려받은 집권당의 인물교체였다.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지만 제5공화국의 출범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는 야당의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동안 제5공화국 헌법의 부칙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가 구

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이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정치풍토정화법」을 만들어 4정치인 600여 명의 정치활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1985년 1월 20일 「정치풍토정화법」에서 해금된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신한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총선에서는 신한민주당이 67명(지역구 50명, 전국구 17명)이 당선되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고, 집권당인 민정당은 148명(지역구 87명, 전국구 61명)이라는 저조한 당선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기존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이 35명선에서 당선되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국민당은 21명에 불과하였다. 결국 야당들의 흡수·통합으로 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문제와 개헌문제는 새야세력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로 가열되었으며, 개헌문제의 여·야간 대립은 국회 밖으로 번져 나갔다.

이에 집권당과 정부는 호헌과 억압정책으로 대응하였다. 1987년 4월 13일 개헌 유보조치를 정부에서 단행하자, 야당·새야·학생 및 일반국민들은 4·13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에 이른바 시국수습 8개 항을 포함한 6·29선언이었다.

6·29선언에 따라 여·야간의 개헌협상이 재개되고, 1987년 10월 12일에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으로 하는 새 헌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9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1987년 12월 16일의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그는 1988년 2월 25일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6공화국의 정치적 특징은 첫번째로 1990년 2월 이전에는 야대여소의 구도로 운용됨에 따라 5공 청산문제가 주요쟁점이었다. 해결의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청문회제도'이다. 이른바 청문회 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이 야당공세에 밀려 일손을 놓고 표류하는 국정마비 현상이 초래되었다. 두번째로 민정당과 당시 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여대야소의 민주자유당을 만들어 다수의 논리로 국회의 운영을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 강행하는 등 대결논리를 답습하였다.

직선제로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당시의 민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후보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의 4파전 선거로 노태우 후보는 전국유효투표의 36.6%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2위는 김영삼 후보로 28.0%, 김대중 후보는 27.1%, 김종필 후보는 8.1%의 득표율을 올렸다. 노태우 후보는 전체의 1/3밖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노태우 33.2%, 김영삼 27.6%, 김대중 27.4%, 김종필 11.7%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노태우 후보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 36.6%이나 군포시에서는 33.2%로 저

조한 지지율이었다. 선거결과는 〈표 22〉, 〈표 23〉과 같다.

〈표 22〉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군포읍)	46,125	42,265	3,860	727	41,538
경기도	3,352,554	2,962,014	390,540	56,691	2,905,323
전 국	25,873,624	23,066,419	2,807,205	463,008	22,603,411
비율(%)	시흥군(군포읍)	91.6	8.4	1.7	98.3
	경 기 도	88.4	11.6	1.9	98.1
	전 국	89.2	10.8	2.0	98.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2집』, 757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 선거 상황』, 132~133면.

〈표 23〉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표	득 표 수				
		노태우 (민정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평민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신정일 (한주의당)
시흥군(군포읍)	41,538	13,770	11,479	11,370	4,867	52
경기도	2,905,323	1,204,235	800,274	647,934	247,259	5,621
전 국	22,603,411	8,282,738	6,337,581	6,113,335	1,823,067	46,650
비율(%)	시흥군(군포읍)	33.2	27.6	27.4	11.7	0.1
	경 기 도	41.5	27.5	22.3	8.5	0.1
	전 국	36.6	28.0	27.1	8.1	0.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46~47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대통령 선거 총람』, 308면.

14. 제14대

김영삼의 정치역정은 자유당에서 출발하여 대부분을 야당인으로 투쟁한 점에서 그를 민주투사의 전형적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는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통일민주당을

합친 거대조직인 민주자유당의 창당의 주역을 맡으면서 오랜 야당생활을 청산하고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의 정국을 깨고 여당 정치인으로 탈바꿈하였다.

김영삼은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정치는 1961년 5·16쿠데타 이래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군부잔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영삼정권의 문민정부는 과거 역대정권과 달리 정통성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문민정부의 정치이념은 개혁으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세계화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규범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제14대 국회에서는 57명의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사당을 떠났다. 이어 1995년 2월 9일에는 민주자유당을 함께 창당한 김종필은 텔당하였으며,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은 국민회의를 창당·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1995년 10월 15일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설이 폭로되자 정국은 5·6공 청산돌풍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한보그룹 특혜와 관련설 등으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문민정부의 개혁방향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김영삼은 13대 노태우대통령이 얻은 36.6%보다도 많은 42%를 얻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전국 유효투표율의 42%를 얻었으나, 우리 군포시에서는 김대중후보보다 0.7%를 적게 득표하였다. 당시 선거결과는 <표 24>, <표 25>와 같다.

<표 24> 제14대 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군 표 시	82,998	67,624	15,374	705	66,919
경 기 도	4,354,271	3,502,774	851,497	51,379	3,451,395
전 국	29,422,658	24,095,170	5,327,488	319,761	23,775,409
비 율(%)					
군 표 시	81.5	18.5	1.0	99.0	
경 기 도	80.4	19.6	1.5	98.5	
전 국	81.9	18.1	1.3	98.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52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 선거 상황」, 1996, 100~101면.

〈표 25〉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분 지역	유효 투표수	득 표 수						
		김영삼 (민자당)	김대중 (민주당)	정주영 (국민당)	박찬종 (신정당)	이병호 (대한정의당)	김옥선 (무소속)	백기완 (무소속)
군포시	66,919	23,934	24,451	12,749	4,792	78	237	678
경기도	3,451,395	1,254,025	1,103,498	798,356	239,140	6,299	13,685	36,392
전 국	23,775,409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0	86,292	238,648
비율 (%)	군포시	35.8	36.5	19.0	7.2	0.1	0.4	0.1
	경기도	36.3	32.0	23.1	6.9	0.2	0.4	1.1
	전 국	42.0	33.8	16.3	6.4	0.1	0.4	1.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431면.

제3절 부통령선거

1. 초 대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20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초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초대 부통령 선거를 무기명투표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하였다. 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김구가 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선투표에서 이시영후보가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초대 부통령선거 결과

구 분	재적 의원 수	재석 의원 수	투자자수			기권 자수	투표율 (%)	유호투 표율 (%)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유효	무효	계				이 시 영	김 구	조 만 식	오 세 창	장 택 상	서 상 일	이 구 수	계
1차투표	198	197	197	0	197	1	99.5	99.5	113	65	10	5	3	1		197
2차투표	198	197	196	1	197	1	99.5	99	133	62	0	0	0	0	1	19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1면.

2. 제2대

제2대 부통령선거는 제1대 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되었는데,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재임 중에 사임함으로써 국회에서는 보궐선거에 의해 김성수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제2대 부통령선거 결과

구 분	재적	재석	투자자수			기권 자수	부 표율 (%)	유호부 표율(%)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의원 수	의원 수	유효	무효	계				김 성 수	이 갑 성 영	합 태 상	장 태 상	지 청 천	김 창 숙	계
1차부표	210	151	150	1	151	59	71.9	99.3	66	53	17	11	2	1	150
2차부표	210	151	151	0	151	59	71.9	100	68	65	10	5	2	1	151
결 선	210	151	151	0	151	59	70.0	100	78	73	0	0	0	0	15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2면

3. 제3대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헌헌법이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헌법은 정·부통령 간선제가 국민직선제로 개정되어 직접선거의 절차법으로 정·부통령 선거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제3대 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부통령선거는 제2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되었으므로 선거인수는 동일하나 투표자수는 대통령선거보다 5,001표가 적다. 그 이유는 대통령선거를 먼저하고 부통령선거는 뒤에 하였기 때문이다. 전국투표율은 88%이었으며, 유효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8.1%이다.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과 부통령에 이범석을 지정하였으나, 선거 도중 이승만은 무소속의 합태영후보를 지지하였다. 9명의 후보 중 합태영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41.3%를 득표하여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28>, <표 29>와 같다.

〈표 28〉 제3대 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43,128	34,328	8,800	705	33,623
경기도	912,299	775,521	136,778	13,253	762,268
전국	8,259,428	7,270,882	988,546	137,585	7,133,297
비율(%)	시흥군(남면)	79.6	20.4	2.1	97.9
	경기도	85.0	15.0	1.7	98.3
	전국	88.0	12.0	1.9	98.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7면.

〈표 29〉 후보자별 득표현황

후보자 지역	유효 투표수	이범석		이갑성		조병옥		이윤영		임영신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33,623	23,340	69.4	977	2.9	842	2.5	1,385		454	
경기도	762,268	252,090	33.1	35,154	4.6	27,776	3.6	42,038		13,195	
전국	7,133,297	1,815,692	25.5	500,972	7	575,260	8.1	458,583		190,211	
후보자 지역	유효 투표수	전 전 한		합 태 영		백 성 옥		정 기 원		계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33,623	967	2.9	4,974	14.8	327	1.0	357	1.1	33,623	
경기도	762,268	21,076	2.8	347,799	45.6	10,547	1.4	12,593	1.7	762,268	
전국	7,133,297	302,471	4.2	2,943,813	41.3	181,388	2.5	164,907	2.3	7,133,29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38면.

4. 제4대

제4대 부통령선거는 제3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었으며, 입후보자는 자유당의 이기붕 외 7명이었다. 선거 도중 박기출과 이종태가 사퇴함에 따라 6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46.4%를 얻은 장면이 당선되었다.

선거에 관한 구역 및 선거인수 등은 대통령선거와 차이가 없으나, 전국 투표자수는 대통령 선거 후 부통령선거를 하였기 때문에 투표자는 대통령투표보다 0.03%가 적었으며

유효투표는 투표자총수의 95.3%였다. 선거결과는 〈표 30〉, 〈표 31〉과 같다.

〈표 30〉 제4대 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42,325	40,090	2,235	2,182	37,908
경 기 도	1,119,859	1,058,644	61,215	56,075	1,002,569
전 국	9,606,870	9,064,194	542,676	421,700	8,642,494
비율(%)	시흥군(남면)	94.7	5.3	5.4	94.6
	경 기 도	94.5	5.5	5.3	94.7
	전 국	94.4	5.6	4.7	95.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40면.

〈표 31〉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분 지 역	유효 투표수	이기봉		장면		이윤영		윤치영		이범식		백성우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37,908	14,704	38.8	13,864	36.6	189	0.5	1,522	4.0	3,685	9.7	944	2.5
경 기 도	1,002,569	424,104	42.3	450,140	44.9	6,768	0.7	40,720	4.1	55,621	5.5	25,216	2.5
전 국	8,642,494	3,805,502	44.0	4,012,654	46.4	34,926	0.4	241,278	2.8	317,579	3.7	230,555	2.7

5. 제5대

제5대 부대통령선거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이는 제4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후보자 4명은 자유당의 이기봉,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이며, 민주당의 장면을 제외한 3명의 후보자는 자유당 대통령후보인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 선거에서 당선자는 이기봉이었으나, 1960년 4월 25일 국회에서 당선 무효되었다.

선거에 관한 구역과 선거인수는 대통령선거와 동일하고, 전국 투표자수는 선거인 총수의 97.0%이며, 유효투표는 투표자 총수의 96.9%이다. 선거결과는 〈표 32〉, 〈표 33〉과 같다.

〈표 32〉 제5대 부통령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지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51,379	49,956	1,423	1,565	48,391
경기도	1,343,318	1,309,080	34,238	45,447	1,263,633
전 국	11,196,490	10,861,573	334,917	334,128	10,527,445
비율(%)	시흥군(남면)	97.2	2.8	3.1	96.9
	경 기 도	97.5	2.5	3.5	96.5
	전 국	97.0	3.0	3.1	96.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45면.

〈표 33〉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지 역	유효투 표총수	이 기 봉		김 준 연		임 영 신		장 면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득표수	비율
시흥군(남면)	48,391	36,633	75.7	759	1.6	596	1.2	10,403	21.5
경 기 도	1,263,633	955,804	75.6	20,372	1.6	8,771	0.7	278,686	22.1
전 국	10,527,445	8,387,059	79.2	249,095	2.4	97,533	0.9	1,843,758	17.5

제4절 국회의원선거

1. 초 대

1947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총선거실시가 가결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전 지역에서 투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1948년 2월 6일 유엔소총회에서 ‘가능지역 내의 선거실시에 관한 권한’을 유엔 한국위원회에 부여하여 동위원회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이내에 가능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된 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이 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시행한 법령이었다. 전국에서 948명의 입후보자가 낙선했는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가 235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소속은 입후보자의 44%에 해당하는 41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선자는 제주도 2개 지구를 제외한 198명이며, 선거인수는 전체인구의 40.9%에 해당하는 7,840,871명이고, 투표자수는 선거인수의 95.5%에 해당하는 7,487,649명이었다.

사상 처음 실시한 보통선거에 높은 투표율은 우리 국민이 품고 있는 독립정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결과였다. 그러나 여성후보자 중 한명도 당선되지 못한 점을 볼 때 유교적 의식이 잔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정당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소속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낙선했고, 정당다운 정당이 없어 이승만이 총재로 있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가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을 하였다. 임시의장은 선거법에 의해 최고령자인 이승만이 맡아 개원식의 절차를 밟았다. 임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로 4년이었다. 이 제헌국회에서는 국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산본리 출신의 이재형이 당선되었다. 당시의 선거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제헌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위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시흥군	유지연	남	43	농업	휘문고졸	면 장		6,259	
	장배근	남	40	공장장	소학교졸	회사원	한국민주당	3,986	
	이영섭	남	50	회사원	중 졸	면장, 회사원		10,589	
	이재형	남	33	금융업	일본대전문부법학졸	금융조합이사		13,528	당선자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35면.

2. 제2대

제헌국회에서 새로이 1950년 4월 10일 의결을 거쳐 법률 제121호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정수 210명에 2,209명이 입후보하여 1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징은 우리 정부에 의

하여 처음으로 관리·집행된 국회의원선거인 동시에 가장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인 점이다.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졌던 정당 단체가 이 선거에서 참패하였으며, 제헌의원의 재선은 불과 31명에 그쳤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수립 후 2년간 기존 정당 단체에 비판적이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당선자가 2인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자각심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대 국회의 임기 시작은 1950년 5월 31일로 6월 19일에 개원하였고, 임기는 4년으로 1954년 5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전란으로 피난 도중 국회를 운영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산본리 출신의 이재형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제2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시흥군	이재형	남	35	국회의원	일본대전무부법학졸	금융조합이사	국민당	12,148	당선
	전규설	남	43	회사원	중졸	공장장	무소속	7,520	
	양서홍	남	41	농업	중졸	교원	한청	6,855	
	이영섭	남	51	잡사업	중졸	면장, 회사원	무소속	10,059	
	김상기	남	50	목사	소졸	농업	무소속	2,06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106면.

3. 제3대

1952년 일명 부산 정치파동에 의한 발췌개헌안이 7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7일 자로 공포됨으로 국회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시 중인 관계로 참의원의 구성은 하지 못하고,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1954년 5월 20일에 실시하여 제3대 국회를 구성하였다. 임기는 1954년 5월 31일부터 1958년 5월 30일까지 4년간이었다.

특징은 우리 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의원후보자 공천제를 도입하여 정당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점이다. 선거결과는 자유당 114석과 민주국민당 15석으로 의석비율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무소속출마자들이 67석이나 차지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초대와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재형이 선거도중 사퇴하여 자유당 소속의 이영섭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제3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시흥군	백봉운	남	30	회사원	일본법대법과 종퇴	국민당중앙위원	국민당	8,433	
	이재형	남	39	민의원의원	일본대전문부법학졸	금융조합이사	무소속	사퇴	
	이영섭	남	54	농 업	중앙중졸	안양중학이사장	자유당	24,359	당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대국회의원 선거상황』, 206면.

4. 제4대

1954년 11월 29일 공포된 제2차 개정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법의 제정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국회도 제3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어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법안 여야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수차에 걸쳐 여야간 협상을 한 결과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의 협상법안이 완성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다. 당시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은 간첩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보수 양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각축전이 되었다.

선거의 특징은 국민 각자의 민주선거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가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제헌국회의원선거와 제2·3대 국회의원선거는 천여 명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하였지만, 제4대 선거는 841명만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의 이점을 살려 득표수 42.1%에 의석수 54.1%인 126석을 얻어 원내 안정세력을 구축하였고, 신인이 112명이나 진출한 점 등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당인 자유당간의 의석비율과 득표비율의 격차를 최소화시켰다. 이는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을 계기로 민주국민당이 무소속과 제휴하여 민주당을 창당함으로 야당진영이 통합되었고, 이승만정권의 무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4대 국회는 4·19혁명과 1960년 6월 15일 헌법개정으로 1958년 5월 31일부터 1960년 7월 28일까지(2년 1개월 28일)를 임기로 단명하였다.

군포시에서는 산본리 출신의 이재형후보가 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제3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시흥군	홍현표	남	51	변호사	경도제학부 졸업	성대 총장	민주당	8,455	
	황의성	남	36	청부업	경기공업직업학교졸	대한토목학회이사	자유당	13,414	
	이재형	남	43	국회의원	일본대전문부법학졸	금융조합이사	자유당	15,128	당선
	이영섭	남	58	민의원	중앙중졸	안양중학이사장	무소속	3,88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286면.

5. 제5대

4·19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다. 민중 혁명에 의해 이승만대통령 하야는 물론이고 정·부통령선거는 무효가 되고, 허정 과도내각이 구성되었다.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제3차 개헌헌법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6월 23일 개정·공포하고, 민의원은 해산하였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군포시에서는 무소속의 이재형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것이다. 참의원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서울특별시·도 단위로 하고, 의원정수는 2~8명으로 하였다. 이 선거의 후보자는 시·도에 따라 최하 7명에서 최고 34명이었다.

제5대 국회는 민의원의원 233명과 참의원의원 58명으로 구성되었고, 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집권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1야당이라고 할만한 정당은 없었고, 자유당은 2명의 의석을 얻어 사실상 붕괴되었다. 제5대 국회는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선거 및 국무총리 인준 등 제2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등의 입법을 공포하였다. 이어

1960년 10월 17일에는 내각책임자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어 민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우리 헌정사에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제5대 국회는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하여 임기 개시 9개월만에 해산을 당하는 비운의 국회였으며, 이는 역대 국회사상 최단명의 임기였다. 선거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제5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 고
시흥군	박영성	남	28	회사원	단국대졸	전국하도호국단 중앙위원장	무소속	6,923	
	김용진	남	55	치과의사	정성치대졸	서울치대이사	무소속	2,705	
	홍현표	남	53	변호사	경고제학부졸업	성대 총장	무소속	8,696	
	배봉운	남	36	무 직	일본법대중퇴	민주당군당위원장	민주당	8,515	
	이재형	남	45	민의원	일본대전문부법학졸	금융조합이사	무소속	15,112	당선
	정병학	남	40	교 수	서울대졸	서울대강사	무소속	2,65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370면

6. 제6대

군부세력들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은 1963년 1월 1일부터 재개되었다. 군부세력은 기존의 정치제도 및 정당을 일소하고, 동년 2월 26일 창당대회를 통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이에 맞서 재야 정치지도자들과 구정치인들은 각기 정당을 만들어 민정당 외 10개의 정당을 창당하는 등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였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는 1963년 11월 26일 실시되었다. 임기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13일간이었다. 선거의 특징은 집권당의 원내 안정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전국구’로 분정하여 이른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를 두기로 한 점과 무소속 입후보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를 설욕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선거였다.

제6대 총선은 역대 선거 중에서 전국평균 72.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원인은 동

절기에 접어들어 낮은 기온과 선거운동에 대한 많은 규제였다.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득표율 33.5%로 전체의석의 62.8%에 해당하는 110석을 차지하였고, 민정당이 전체의석의 23.4%인 41석을 얻어 제1야당이 되었다.

우리 군포시는 경기 제13 선거구로 시흥군·부천군·옹진군을 통합하여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민정당의 육조남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39>, <표40>과 같다.

<표 39> 제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3,290	2,117	1,173	64	2,053
경기도	1,429,892	985,581	444,311	31,988	953,593
전국	13,344,149	9,622,183	3,721,966	323,353	9,298,830
비 율(%)	시흥군(남면)	64.3	35.7	3.0	97.0
	경기도	68.9	31.0	3.2	96.8
	전국	72.1	27.9	3.4	96.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특표상황』, 238~239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686면.

<표 40> 제6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13 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박재상	남	28	무직	한양공고졸업	지구당위원장	자유당	4,345	
	김억배	남	48	회사원	일본대학법과전문부졸	대한물산이사	신민회	1,719	
	정용규	남	33	실업인	서울대경제학과졸	우주문화사대표	자유민주당	2,609	
	박재환	남	58	농업	일본동지사대학졸	제2·5대 민의원	국민의당	18,388	
	박승희	남	44	회사사장	일본경고대학원졸업	대한정밀공업회사	민주당	12,320	
	엄기옥	남	50	회사원	구보성전상과졸업	월산산업회사회장	민정당	10,032	
	김재호	남	30	상업	서울대행정학과졸업	고등학교 교사	정민회	2,122	
	이범석	남	51	무직	서울상업부기전문학교 졸업		추풍회	2,390	
	육조남	남	45	회사중역	동경제국대학법학부졸	경희대교수	민주공화당	19,522	당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551면.

7. 제7대

제6대 총선을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제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중인 1966년 12월 2일 개정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1967년 6월 8일 실시되었다.

총선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전국평균 50.6%의 득표율을 보여 제6대 총선보다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의석수는 전체의석의 73.7%인 129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이러한 원인은 그 동안 경제성장 실적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제6대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정당은 1965년 5월 11일 민중당으로 신설·합당되었고, 또한 민중당은 1967년 2월 11일 신민당과 신설·합당되었다. 선거결과 전국득표율 32.7%, 전체의석의 25.7%인 45석을 얻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선거의 특징은 '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제도 신설이었다. 또 투표율이 6대 총선보다 다소 높은 76.1%이며,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11개 정당이었다. 임기는 1967년 7월 1일부터 1971년 6월 30일까지 4년이었다. 군포시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오학진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41>, <표 42>과 같다.

<표 41> 제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분 지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3,953	2,700	1,253	98	2,602
경기도	1,610,659	1,191,278	419,381	37,910	1,153,368
전국	14,717,354	11,202,317	3,515,037	346,309	10,856,008
비 율(%)	시흥군(남면)	68.3	31.7	3.6	96.4
	경기도	74.0	26.0	3.2	96.8
	전국	76.1	23.9	3.1	96.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174~17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02면.

〈표 42〉 제7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13 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박재상	남	31	육영사업	독학	중앙예술학원장	자유당	2,501	
	이병상	남	44	농업	대출	경기도당위원장	민중당	1,526	
	장석규	남	32	농업	대출		대중당	1,371	
	박재환	남	62	농업	대출	전농립부장관	신민당	30,620	
	오학진	남	39	국회의원	대출	지구당위원장	민주공화당	56,024	당선
	안동선	남	31	무직	대출	신민당중앙당유세부차장	민주당	2,1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551면.

8. 제8대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1971년 5월 25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1969년 1월 23일 공포된 이른바 보장입법에 의한 선거법 개정과 1970년 12월 22일 공포된 「협상 선거법」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는 22명이 증가된 153명이었고, 전국구는 7명이 증가된 51명으로 늘어나 전체의석은 29명이 증가한 204석이었다.

이 선거는 1969년 9월 14일 당시 공화당의원 122명이 국회 제3별관에서 제6차 개헌을 한 후 처음 실시된 선거였다. 민주공화당은 장기집권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민심은 박정희 정권을 이반하기 시작하여 민주공화당의 지지도가 현격히 저하되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은 전국평균 48.8%이고,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은 44.4%로 불과 4.4%의 차 이를 보였다. 의석수의 비율도 11.8%로 좁혀져 민주공화당 113, 신민당 89석을 획득하였다. 선거의 특징은 야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여당의 견제를 가능케 한 점이다. 그러나 제8대 국회는 1년 3개월 만인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임기는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17일까지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였다(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군포시의 선거결과는 신민당의 이택돈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43〉, 〈표 44〉와 같다.

〈표 43〉 제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부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민)	5,801	3,701	2,100	51	3,650
경기도	1,697,587	1,229,069	468,518	23,036	1,206,033
전 국	15,610,258	11,430,202	4,180,056	234,280	11,195,922
비 율(%)	시흥군(남민)	63.8	36.2	1.4	98.6
	경기도	72.4	27.6	1.9	98.1
	전 국	73.2	26.8	2.0	98.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대 국회의원선거 부표구별 성당 및 후보자 특표상황」, 18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719면.

〈표 44〉 제8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고
제13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이영호	남	57	국회의원	대출	국회예산결산위원	민주공화당	24,324	
	이태훈	남	36	변호사	대출	서울고등법원판사	신민당	34,535	당선
	박재상	남	35	정치인	박학	중앙하원원장	국민당	1,364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9. 제9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비상사태 특별선언을 통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대신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우리 체질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 필요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라는 절대적인 지지로서 유신헌법이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하였다. 개정헌법은 7차 개헌에 해당하며 박정희를 종신대통령을 만드는 우리 헌정사에 큰 결점을 낸 헌법이었다.

국회의원선거도 제1야당이 비록 득표율면에서 집권여당을 압도하였지만, 의석비율은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는 등 제도적인 구속을 받았다. 즉 대통령은 전체의석 중 1/3

에 달하는 전국구의원을 지명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정당소속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였다.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유신체제에서 처음 실시된 선거였다. 이 선거는 공영제 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여 1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동반선거'로 알려진 중선거구제로 73개의 선거구로 나뉘었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였던 것을 제9대 총선거에서는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양하여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다.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선출의원 146명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73명 등 219명이었다.

선거의 득표율은 공화당 38.7%, 신민당 32.5%로서 불과 6.2%의 차이이나, 의석의 비율은 공화당 146명, 신민당 52명으로 무려 약 3배 정도였다. 제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1973년 3월 12일부터 1979년 3월 11일까지 6년이었다.

군포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첫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오학진과 신민당의 이택돈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45>, <표 46>과 같다.

<표 45> 제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5,801	3,701	2,100	51	3,650
경기도	1,697,587	1,229,069	468,518	23,036	1,206,033
전국	15,610,258	11,430,202	4,180,056	234,280	11,195,922
비 율(%)	시흥군(남면)	63.8	36.2	1.4	98.6
	경기도	72.4	27.6	1.9	98.1
	전국	73.2	26.8	2.0	98.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특표상황』, 12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282면.

〈표 46〉 제9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고
제13지역구 (시흥군, 부천군, 옹진군)	오학진	남	44	무	유대졸	국회 상공분과위원회 위원장	민주공화당	42,209	당선
	이택돈	남	37	변호사	대 졸	제8대 국회의원	신민당	49,646	당선
	안동선	남	37	무	대중퇴	경기제6지구당 위원장	통일민주당	22,394	
	김낙율	남	44	의사	대 졸	도정자운위원	무소속	5,186	
	김봉기	남	36	회사사업	대중퇴	승공연 합경기도단장	무소속	3,95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0. 제10대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되었으며, 제9대보다 지역구 8명과 전국구 4명의 의석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10·26사태와 5·17조치로 기존 정당이 해체됨에 따라 1년 7개월 15일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 선거는 5·16쿠데타 이후 실시된 5번의 총선거 중 가장 높은 77.1%의 투표율이 나타났다. 야당인 신민당이 32.8%, 집권당인 공화당이 31.7%를 득표하여, 득표율에서 신민당이 1.1% 앞선 결과를 보였다. 이는 건국 이후 총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의 정치 의식 수준의 양상을 실증하는 투표성향을 말해주었다. 민의와 달리 의석수는 공화당이 63%인 145명이고, 신민당은 26.4%인 61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혀용된 무소속은 22석으로 9.5%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득표율과 의석비율과의 괴리현상은 선거제도의 모순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

군포시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윤국노, 신민당의 이택돈이 당선되었다. 신민당 이택돈은 공화당의 윤국노를 무려 26,905표를 앞서 역대 선거 중 야당이 성공한 처음 사례이다. 선거결과는 〈표 47〉, 〈표 48〉과 같다.

〈표 47〉 제1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남면)	18,310	11,986	6,324	145	11,841
경기도	2,403,075	1,827,164	575,911	24,264	1,802,900
전국	19,489,490	15,023,370	4,466,120	210,927	14,812,443
비 율(%)	시흥군(남면)	65.5	34.5	1.2	98.8
	경기도	76.0	24.0	1.3	98.7
	전국	77.1	22.9	1.4	98.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특표상황』, 14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제3집』, 460면.

〈표 48〉 제1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6선거구 (시흥군, 부천군, 안양시, 옹진군)	윤국노	남	41	회사대표	대졸	협동조합이사장	민주공화당	81,161	당선
	이택돈	남	42	국회의원	대졸	서울지법판사	신민당	108,066	당선
	신하철	남	43	농업	대학원수료	경기제6지구당위원장	통일민주당	20,778	
	안동선	남	42	상업	대중퇴	민주통일당중앙 조직국장	무소속	36,67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1. 제11대

제10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여당인 공화당을 득표율 면에서 앞질렸고, 국민들 사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짹트고 있었다.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제1야당 총재가 되었고, 정국은 급냉하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요구수준과 갈등들이 정치적 불만과 연결되면서 부마사태에 이어 10·26사태가 발생하였다.

제10대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었고, 기존 정당들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군부

에 의해 정국이 운영되었으며, 기존 정치인들과 재야지도자들은 정치활동을 일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 11월 22일 정치활동이 일부 재개되면서 신당 창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1년 1월 15일 군부에 의해 민주정의당이 창당되었고, 이어 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민주사회당·민권당·신정당 등이 차례로 창당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 25일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무소속을 포함하여 9개 정당들이 대결을 벌였다. 득표율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전국평균 35.6%이며, 민주한국당이 21.6%을 차지하여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전체의석 276명 중 민주정의당 151명, 민주한국당 81명, 한국국민당 25명, 무소속을 포함한 기타 정당 19명이 등 당선되었다.

군포시에서는 민주정의당의 윤국노후보와 민주한국당의 이석용후보가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49〉, 〈표 50〉과 같다.

〈표 49〉 제1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시흥군)	21,808	15,387	6,421	145	15,242
경기도	2,795,272	2,127,704	667,568	22,106	2,105,598
전국	20,909,120	16,397,845	4,511,275	190,520	16,207,325
비 율(%)	시흥군(시흥군)	70.6	29.4	0.9	99.1
	경기도	76.1	23.9	1.0	99.0
	전국	78.4	21.6	1.2	98.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18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2권」, 171면.»

〈표 50〉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6선거구 (시흥군, 안양시, 옹진군)	윤국노	남	44	정치인	대출	제10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81,351	당선
	이석용	남	42	정당인	대출	대우그룹 중역	민주한국당	57,444	당선
	김종면	남	42	언론인	대학원수료	시흥군 행정자문위원	신정당	9,758	
	신하철	남	46	농업	대학원수료	민주통일당 경기도 위원장	통일민족당	20,368	
	박제상	남	45	공익사업	대학원수료	전신민당 중앙상무위원	민주사회당	19,234	
	염재평	남	55	무직	대출	농촌진흥청 공무원	민권당	12,636	
	권수창	남	37	상업	대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한국국민당	40,16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2. 제12대

제1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활동 금지가 해제된 해금인사들과 재야인사들을 주축으로 1985년 1월 22일 이민우를 대표로 하는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5년 2월 12일에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아래 새로운 정당들이 창당되어 무소속을 포함한 7개의 정당이 대결을 보였다. 이 선거는 경이로움과 신선한 충격을 준 선거였다. 총선을 통해 제아무리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세력일지라도 국민들의 뜻을 외면 한 채 밀고 나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에서 표출되었던 국민의 소망은 빼았겼던 정부선택권(대통령 직선권)을 되찾자는 것이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184명, 비례대표 92명으로 모두 276명이었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35.2%로 148석, 민주한국당이 12.7%로 35석, 신한민주당이 29.3%로 67석을 확보하였다. 제11대 총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신한민주당에 제1 야당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다. 신한민주당은 민주한국당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여 민주한국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총선을 불과 1개월 앞 두고 창당된 정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사례는 우리 나라 현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다른 야당 의원들의 합류로 103석의 의석으로 늘어났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재야인사들과 정치해금인사들로 구성된 신한민주당이 대통령선거 직접 선거방식을 주장하였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호헌을 주장하는 가운데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이런 가운데 학생과 대학교수들은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결국은 국민의 반발에 항복하여 직선제개헌을 채택한 6·29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합의에 의한 개정헌법안을 1987년 9월 18일 재적의원 26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10월 27일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였다.

중선거구제가 채택된 군포시에서는 신한민주당의 이택돈후보와 민주정의당의 윤국노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는 <표 51>, <표 52>와 같다.

<표 51> 제1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시흥군)	26,245	20,205	6,040	279	19,926
경기도	2,791,114	2,318,463	472,651	37,025	2,281,438
전국	23,987,830	20,288,672	3,701,158	312,029	19,974,643
비 율(%)	시흥군(시흥군)	77.0	23.0	1.4	98.6
	경기도	83.1	16.9	1.6	98.4
	전국	84.6	15.4	1.5	98.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35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표 5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4 선거구 (시흥군, 안양시, 광명시, 옹진군)	김종면 (金鍾勉)	남	46	회사 대표	중앙대 사회개발대 학원 수료	신정사회당 대변인, 광명리 이온스 클럽3대회장, 제11 대 국회의원입후보	한국국민당	8,805	
	이택돈 (李宅敦)	남	49	변호 사	서울대 법과대학졸	대법원재판연수관, 제8,9,10 대 국회의원, 신민당대변 인·정책심의회의장	신한민주당	194,690	당선
	이석용 (李錫鎔)	남	46	국회 의원	서울대 법과대학졸	내우전자주식회사 사장, 민 주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 회에산질산특별위원회(3차)	민주한국당	70,973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제4 선거구 (시흥군, 안양시, 광명시, 옹진군)	김정길 (金貞吉)	남	40	정치 인	서라벌예술 대문예창작 과졸	구통일사회당간사, 민사당 당무위원, 신정사회당사무 차장	신정사회당	6,196	
	윤국노 (尹國老)	남	48	국회 의원	경희대 경제학과졸	한국청년회의소중앙회장, 제10,11대 국회의원, 민주정 의당 원내수석부총무	민주정의당	121,949	당선
	곽인수 (郭寅洙)	남	36	회사 이사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반석교회집사, 민권당정무 위원, 민권당홍보대책위원 장	민권당	10,94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3. 제13대

대통령직선제로 출범한 제6공화국의 첫 선거인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1988년 4월 26일 실시되었다. 제13대 총선은 1988년 2월 25일 발효된 제6공화국헌법에 의거 구성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은 여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야당에서 주장한 소선거구제를 민정당이 받아들임에 따라 제9대부터 실시된 중선거구제는 폐지되어 전국을 244개로 분할하고, 전국구의원을 75명이었다.

이 선거에서는 민주화의 영향으로 야당세가 급격히 신장되어 지역 분할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당인 민정당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 경남지역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충청지역에서 각기 압승하였다. 이 선거에서 제5공화국 당시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하락하였다. 즉 제11대 총선에서 35.6%, 제12대 총선에서 35.2%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4.0%로 하락하였다. 반면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집권여당을 압도하는 42.1%에 이르렀다. 특히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신민주공화당이 15.6%의 지지율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의 정국구도가 생겨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의석분포는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기타 10석이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1노3삼(一盧三金)의 치열한 4파전에서 35.9%의 지지를 얻은 노태우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 2월 15일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은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써 민자당 219석, 야당

80석으로 여대야소의 양당체제로 바꾸어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일당 중심의 패권정치가 재연되었다.

군포시에서는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여 민정당의 황철수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는 <표 53>, <표 54>와 같다.

<표 53>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시흥군(시흥군)	48,903	29,597	19,306	332	29,265
경기도	3,413,513	2,495,115	978,398	25,499	2,409,616
전국	26,198,205	19,850,815	6,347,390	208,775	19,642,040
비 율(%)	시흥군(시흥군)	60.5	39.5	1.1	98.9
	경기도	71.3	28.7	1.0	99.0
	전국	75.8	24.2	1.1	98.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487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표 54>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소속	득표수	비고
시흥군, 과천시 선거구	황철수 (黃哲秀)	남	62	민정당경기 4지구당 위원장	서울대 사범대학	경기고교교장, 문교부장 학실장, 경기도교육감	민주 정의당	37,420	당선
	김상원 (金祥源)	남	55	회사대표	경남대학 정경학과	민주협상임운영위원 민주당창당발기인	통일 민주당	30,347	
	강상섭 (姜相燮)	남	41	대학강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성결교연합회장, 과천고 육성희이사	평화 민주당	24,109	
	김형규 (金炯奎)	남	40	회사원	서울대 법대	대한야사회전무위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우리 정의당	3,93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4. 제14대

시흥군 군포읍은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었다. 시로 승격된 이후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처음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 속출되었다. 여대야소의 양당 체제가 통일국민당의 창당으로 3당구도의 여야 균형체제로 재편되었다. 총선결과 민주자유당이 38.5%, 민주당이 29.2



합동연설회

%, 통일국민당이 17.4%, 무소속이 11.5%, 신정치개혁당 1.85%의 득표율을 보였다. 의석은 여당인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 97석, 국민당 31석으로 3당 체제로 재편되었다.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대야소의 구도가 국민선택을 통해 반전되었다.

군포시에서는 7명이 입후보하여 민주당의 제정구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55〉, 〈표 56〉과 같다.

〈표 55〉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군 포 시	70,703	48,741	21,962	443	48,298
경 기 도	4,193,755	2,917,219	1,276,536	36,794	2,880,425
전 국	29,003,828	20,843,482	8,160,346	259,670	20,583,812
비 율(%)	군 포 시	68.9	31.1	0.9	99.1
	경 기 도	69.6	30.4	1.3	98.7
	전 국	71.9	28.1	1.2	98.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569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표 56〉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고
군포시 시흥시	황철수	남	66	민자당경기4 지구당 위원장	서울대졸	국회교육청소년 위 원회위원	민주 자유장	14,167	
	제정구	남	48	사회운동가	서울대졸	야권통합추진회의 상임위원	민주당	21,314	당선
	장학수	남	47	연예인	서울예전졸	KBS TV 극회회장	통일 국민당	6,037	
	이강원	남	45	대웅산업 대표이사	중앙대 고위과 정수료	사회단체따이한 경 기도지부장	신정당	940	
	박재영	남	29	정당인	중앙대 3년중퇴	안양노동상담소 초 대실장	민중당	1,442	
	김종호	남	40	의 사	조선대졸	시흥시 재향군인회 회장	무소속	449	
	서정성	남	51	사 업	동국대졸	청곡장학회회장	무소속	3,94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4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상황』, 193면

15. 제15대

3당합당으로 김영삼대통령과 김종필 대표는 정치적 동지였으나, 1995년 3월 30일 결별하였다. 김종필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제1투표소)

년 12월 6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김영삼정부의 「정치자금법」과 「선거관련법」 등 개정으로 선거관리를 비교적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자유롭고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과열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이 격돌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집권당인 신한국당 139명, 국민회의 79명, 자민련 50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로 귀결되었다. 신한국당은 과반수의석 확보는 실패하였지만, 부산의 12개 선거구 전체와 경상남도 23개 선거구 중 17명을 당선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야당성향이 강했던 서울지역에서도 47명 중 27명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38명 중 18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초기의 성과를 올렸다. 자민련은 대전의 7개 선거구를 석권하였으며, 충남의 13개 선거구 중 12명과 또 대구의 13개 선거구 중 8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져력을 과시하였다. 국민회의는 호남권의 37개 선거구 중 전북 군산만을 신한국당에게 내주고 나머지는 석권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는 전체의석의 47석 중 18석을 확보하였다. 민주당은 당지도부마저 낙선함으로써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도 실패하여 군소정당으로 침몰하는 비운을 맞았다.

제15대 총선거의 특징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하였고, 지역맹주들의 영향력이 재획 인됨에 따라 정당의 지역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야당색이 강하던 서울에서 신한국당인 여당이 선거사상 처음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한 점이다. 또한 정치 초년생들이 137명이나 국회에 진출하여 정치풍토 개선과 세대교체의 순기능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군포시에서는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유선후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표 57>, <표 58>과 같다.

<표 57>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현황

구 분 지 역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투표	유효투표
군포시	161,710	101,215	60,495	1,297	99,918
경기도	5,298,160	3,259,752	2,038,408	63,983	3,195,769
전국	31,488,294	20,122,799	11,365,495	469,726	16,953,073
비 율(%)	군포시	62.6	37.4	1.3	98.7
	경기도	61.5	38.5	2.0	98.0
	전국	63.9	36.1	2.3	84.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구별 정당 및 후보자 득표 상황』, 75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72면.

〈표 58〉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득표현황

선거구	후보명	성별	연령	직업	학 력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고
군	강창용	남	51	변호사	서울대졸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신한국당	30,123	
	유신호	남	43	변호사	서울대법학대학원 졸업	국민회의 윤리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31,869	당선
포	여의나	남	50	동국약품 대표(주)	농국대졸	민주개혁정치 모임 사무처장	통합민주당	13,018	
	심양섭	남	36	정당인	서울대졸	자민련 부대변인	자유민주연합	21,223	
시	박기수	남	77	정치인	병지대사회교 유과정수료	전남도의회의원	무당파	414	
	정창록	남	43	정치인	서울대졸	국가경쟁력 강화특위원회	무소속	3,27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228면.

제5절 국민투표

1. 제1차

제1차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제5차 개헌에서 실시되었다. 3·15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자유당정권의 붕괴에 이어 민주당정권이 출범하였으나, 수권정당으로 무능하여 민주주의라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5·16쿠데타로 군부에 의해 시들어버렸다.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절대권력기관을 설치하고 정국이 안정되면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등 정치일정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군부의 정권획득의 수단일 뿐이었다. 박정희는 국민의 관심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군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1962년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로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투표법 제1조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제1차 국민투표는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의를 거쳐 혁명정부가 제시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이전의 헌법개정안은 4차에 걸쳐 국회에서 개정하였으나, 제5차 헌법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 것이다.

제5차 개정헌법안은 공청회를 마친 후 1962년 11월 5일 박정희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민투표일이 공고되었다. 동년 12월 5일에는 5·16직후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1년 7개 월만에 해제한 가운데 동년 12월 6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헌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의원 25명 중 22명이 투표하여 찬성 22표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2월 17일 헌정사상 처음 제1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의 대통령중심제의 복귀로 부통령제 폐지, 실권이 없는 국무총리, 입법부 단원제, 대법원장의 대통령이 임명 등이었다. 부통령제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중심적 구조는 1972년까지 존속되었다. 비례대표제, 국회단원 4년제, 정당제 및 복수정당제 도입과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투표는 전국 7,117개 투표구에서 85.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78.8%와 반대 19%로 나타났다.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90%인 제주도, 2위는 81.9%인 전남, 반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22.9%인 서울이었다. 경기도는 전국보다 찬성율이 1.6% 낮으며, 반대율은 전국보다 1.4%나 높게 나타났다.

군포시(시흥군 남면)에서는 기권율이 전국비율보다 1.4%나 높은 것이 특징이다. 투표 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 59〉 제1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시흥군(남면)	62,067	52,065	40,615	10,144	1,306	10,002
경 기 도	1,512,281	1,275,898	985,104	259,816	30,978	236,383
전 국	12,412,798	10,585,998	8,339,333	2,008,801	239,864	1,826,800
비 율(%)	시흥군(남면)	83.9	78.0	19.5	2.5	16.1
	경 기 도	84.4	77.2	20.4	2.4	15.6
	전 국	85.3	78.8	19.0	2.2	14.7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769면.

2. 제2차

5·16쿠데타를 통해 정치권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한 박정희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은 인정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정통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국 근대화와 경제건설을 국가목표로 산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화는 모순점도 수반하였지만, 총량지표면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 제19조 3항은 “대통령은 제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3선이 불가능하게 되자, 집권당인 공화당은 박정희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추진하였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에 의해 3선 개헌이 추진됨에 따라 야당과 재야인사들은 ‘대통령3선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2월 3일에 발기시키는 등 정치권이 소란하였다. 공화당은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8월 10일 122명의 소속의원명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8월 14일에는 국민투표법안이 국회에 송달되어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묶어서 9월 9일 표결에 부치게 되었다. 공화당은 9월 14일 새벽 2시경 국회 제3별관에서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10월 17일 실시되었다.

〈표 60〉 제2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남면(시흥군)	4,704	3,424	1,971	1,371	82	1,280
경 기 도	1,609,298	1,249,443	755,748	451,554	42,141	359,855
전 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414,014	3,444,887
비 율(%)	남면(시흥군)	72.8	57.6	40.0	2.4	27.2
	경 기 도	77.6	60.5	36.1	3.4	22.4
	전 국	77.1	65.1	31.3	3.6	22.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287면.

국민투표는 전국 8,471개 투표구에서 77.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65.1%와 반대 31.3%로 나타났다. 찬성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75.7%, 2위인 경남 73.9%, 반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로 50.5%이다. 경기도는 전국보다 찬성률이 4.6% 낮으며, 반

대율은 전국보다 4.8%가 높게 나타났다.

군포시에서는 전국 찬성을보다 무려 7.5%나 낮게 나타났다. 당시의 투표결과는 〈표 60〉과 같다.

3. 제3차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제3차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제6차 개헌을 통하여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야당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다. ‘5적 폭화사건’ 등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시국은 어수선하였다. 1971년 12월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 제4별관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어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제78회 국회 제30차 본회의인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정부보고’에서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은 최근 중공이 UN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한반도의 안보에 긴박성을 들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박정희는 유신장기집권을 향한 준비를 차차 진행하였고, 결국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해산된 국회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 제3항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1972년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률로 공포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안을 의결·공고한 후 11월 21일 제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유신헌법안의 골자는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중임제한을 철폐하였으며, 대통령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초법적 권한으로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었다.

국민투표는 전국 10,402개 투표구에서 91.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91.5%와 반대는 7.7%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95.8%, 2위는 전남으로 95.1%이며, 반대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6%였다. 경기도는 전국보다 찬성률이 1.3%가 높으며, 반대는 전국보다 1.3%가 낮게 나타났다.

국민투표의 특징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찬성을 높게 나타난 점이다. 1971년 4월 27일 실시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후보인 김대중의 지지도가 상승함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는 전라남도가 찬성을 2위라는 것은 당시까지 지역감정은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포시에서는 전국 평균찬성을 보다 1.6% 높게 나타났는데, 투표결과는 <표 61>과 같다.

<표 61> 제3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남면(시흥군)	4,704	3,424	1,971	1,371	82	1,280
경기도	1,609,298	1,249,443	755,748	451,554	42,141	359,855
전 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414,014	3,444,887
비 율(%)	남면(시흥군)	72.8	57.6	40.0	2.4	27.2
	경기도	77.6	60.5	36.1	3.4	22.4
	전 국	77.1	65.1	31.3	3.6	22.9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288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의 투표구별 투표상황」, 127면.

4. 제4차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과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제4차 국민투표는 법률 제2559호 ('73. 3. 3)로 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아니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유신헌법에 대하여 1973년 12월 24일부터 야당과 재야인사들은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대통령은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여 헌법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며 또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구성하는 「긴급조치」 제2호도 선포하였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여사가 저격됨에 따라 국민총화 형성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정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긴급조치 해제와 더불어 헌법개정과 반체제운동은 더 한층 확대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신임과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야당과 재야인사들에 대한 견제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회권한을 대행하던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국민투표법」과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였다.

신민당과 민주회복국민회의와 카톨릭 사제단이 국민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가운데 실시된 국민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야당과 재야인사들은 국민투표 무효 선언과 서명운동을 밝혔다.

국민투표는 전국 10,677개의 투표구에서 79.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73.1%와 반대 25.1%로 나타났다. 찬성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85.7%이고, 2위는 강원도로 82.8%인 반면에 반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40.4%인 서울이었다. 경기도는 전국보다 찬성율이 0.6%가 낮으며, 반대는 전국보다 0.7%가 높게 나타났다.

군포시(시흥군 남면)는 경기도보다 0.6%의 높은 찬성율이 보였다. 당시의 투표결과는 <표 62>와 같다.

<표 62> 제4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남면(시흥군)	9,485	7,818	5,712	1,964	142	1,667
경 기 도	1,892,305	1,603,494	1,162,887	414,009	26,598	288,811
전 국	16,788,839	13,404,245	9,800,201	3,370,085	233,959	3,384,594
비 율(%)	남면(시흥군)	82.4	73.1	25.1	1.8	17.6
	경 기 도	84.7	72.5	25.8	1.7	15.3
	전 국	79.8	73.1	25.1	1.8	20.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289면.

5. 제5차

제5차 국민투표는 1980년 10월 22일 실시되었다.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10·26사태로 사망함에 따라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10·26사태로 국가의 지배 블력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가운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정치 개입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는 등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군부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정권기반을 갖추어 나갔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8월 16일 최규하를 퇴진시키고, 실권자인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정권은 정통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비민주적 정권이었다. 전두환은 5·17 비상조치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후 헌법을 제정하면서 개정했으며, 대통령선거도 유신헌법과 유사한 대통령선거인단제도인 간선원칙에 따라 비경쟁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부의 개헌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정자문회의 신설, 기존정당 및 국회해산을 주요골자였다. 이는 1980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발의하고, 대통령이 공고하였다. 이 헌법개정안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표 63〉 제5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군포읍(시흥군)	21,699	20,718	19,751	816	151	981
경 기 도	2,701,219	2,604,212	2,457,368	116,545	30,299	97,007
전 국	20,373,869	19,453,964	17,829,354	1,357,673	286,899	919,943
비 율(%)	군포읍(시흥군)	95.5	95.4	3.9	0.7	4.5
	경 기 도	96.4	94.4	4.5	1.1	3.6
	전 국	95.5	91.6	7.0	1.4	4.5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290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종합」, 264~265면.

국민투표는 전국 12,173개의 투표구에서 95.5%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91.6%와 반대 7.0%로 나타났다. 찬성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97%이고, 2위는 강원도로 95.2%이며, 반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로 11.4%였다. 경기도는 전국평균율보다 찬성률이 2.8%가 높으며, 반대율은 2.5%가 낮았다.

군포시(시흥군 남면)에서는 전국찬성율보다 2.8%가 높게 나타났다. 투표결과는 〈표 63〉과 같다.

6.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제6차 국민투표는 제9차 개헌에 해당한다. 기존 헌법은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헌법이었다.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이 된 후 헌법개정 주장에 대하여 1987년 4월 13일 개헌유보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당시 집권당 대표인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

국민적 여망을 헌법에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여·야대표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은 단일 개헌안을 국회개헌특위에서 채택하였다. 1987년 9월 18일에는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이 국회재적의원 264명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10월 12일에는 254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국민투표는 78.2% 투표율로 찬성 93.1%와 반대 5.5%였다. 3선 개헌 당시의 77.1%보다는 다소 높은 투표율이었으나, 개헌이 국민적 여망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는 낮은 투표율이었다. 찬성을은 서울특별시 93.7%와 인천직할시 93.5%인 반면 반대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전북·경남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찬성율이 전국 평균율보다 0.3%가 높고, 반대율은 전국보다 0.8%가 낮았다.

군포시(시흥군 남면)에서는 전국 찬성율보다 0.6%가 높게 나타났다. 당시의 투표 결과는 <표 64>와 같다.

<표 64> 제6차 국민투표 결과

구 분 지 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찬 성	반 대	무 효	기 권
군포읍(시흥군)	43,337	27,865	26,111	1,403	351	15,472
경기도	3,284,968	2,674,509	2,498,639	15,272	50,598	610,459
전 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295,345	5,590,976
비 율(%)	군포읍(시흥군)	64.3	93.7	5.0	1.3	35.7
	경기도	81.4	93.4	4.7	1.9	18.6
	전 국	78.2	93.1	5.5	1.5	21.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29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총람』, 264~265면.

제6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1. 초 대

1972년 11월 25일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법」과 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 13일 계엄령을 해제한 후 12월 15일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간접선거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며, 국회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대의정치의 실종을 가져왔다. 대의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여 정당정치의 틀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3권분립과 민주적 절차는 형태를 완전히 잃었으며, 입법·사법·행정 3권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새로운 헌정체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무제한적 정책적 권한과 임명권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시킴으로써 통치권력을 절대화시켰다.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전국 1,630개의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운동은 완전 공영제로 규정되어 후보자의 개별적인 운동이 일체 금지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고질적인 부정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국평균 투표율은 70.4%였고, 군포시(시흥군 남면)에서는 58.9%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시 군포시(시흥군)의 대의원수는 13인이었다. 남면에서는 이관우를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는데, 선거결과는 <표 65>와 같다.

<표 65>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

선 거 구	선거인수	투 표 수	후보별 득표수		무 효	기 권
			이 관 우	유 지 연		
남면(시흥군)	6,692	3,939	1,055	2,074	810	2,75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142면.

2. 제2대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인 1978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제8대와 9대 대통령에 박정

회를 선출한 일 외에는 별다른 일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대의원선거는 1978년 5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제1차 개정과 2차는 1977년 12월 19일이었다. 대의원의 정수는 초대보다 224명이 증가한 2,583명이었다. 제2대 대의원들은 이후 제10대 최규하, 제11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제2대 대의원선거는 전국 1,665개의 선거구에서 5,577명이 등록하여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국투표율은 78.9%였다. 당시 시흥군의 대의원수는 15인이었다. 군포시(시흥군 남면)에서는 이준기와 유지연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당시 선거결과는 〈표 66〉과 같다.

〈표 66〉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	기권
			김성곤	유지연	이관우	이준기		
남면(시흥군)	16,043	12,315	2,213	3,379	2,629	3,880	214	3,728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 169면.

제7절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된 1980년 10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해산되고,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이 대통령 선거제도는 과거 헌법 하에서 실시된 선거의 부작용과 국론분열의 우려 및 막대한 국력 소모를 방지한다는 명분과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권을 잡은 군부로서는 대외명분상 미국식 대통령선거방식인 선거인단에 의한 자유경선방식을 모방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선거인의 수는 5만 명 이상이고,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지게 되어 있다. 대통령선거인단제는 1987년 국민의 저항에 의해 제9차 직선제 개헌에 의해 폐지되었다.

「대통령선거인단법」은 1981년 1월 9일 대통령선거법시행령 제10162호로 발효하여 1월

24일 법률 제3355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2월 11일 실시되었다. 78.1%의 투표율을 보인 이 선거에서 민정당 후보가 3,676명, 민한당 411명, 국민당 48명, 민권당 20명, 무소속 1,123명 등 5,278명이 선출되었다. 민정당 당선자가 69.6%인 사실과 무소속이 21.3%나 당선된 점이 이 선거의 특징이다.

군포시(시흥군 군포읍)에서 선출한 5명의 대의원은 이재권·권오선·김성곤·송봉석·양영석이며, 당시의 선거결과는 <표 67>과 같다.

<표 67> 대통령선거인단 당선자 득표현황

선 거 구	투표인수	후 보 별 득 표 수					비 고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민주정의당	
		이재권	권오선	김성곤	송봉석	양영석	
군포읍(시흥·군)	12,235	2,572	2,149	3,180	2,458	1,876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인단 당선자 명부」, 98면.

제8절 지방자치단체 선거

1. 지방자치법의 연혁

보통선거에 의해 주민참여의 길이 열리고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 시작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헌법에 지방자치제가 보장된 이후부터이다. 일제 36년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모든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의 관제에 딛습하였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헌법규정에 의거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6개월 시한부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행정구역과 행정기구에 관한 약간의 조치 외에는 지방제도를 조선총독부 관제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던 1949년 8월 15일까지 89일간은 지방행정이 무법천지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은 짧은 기간에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모순과 누락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 지방자치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법

이 되었고, 국회 통과시에 비전문가들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 15일 제1차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에서는 시·읍·면장의 임명문제와 기능행사에 관한 문제를 연기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마침내 지방자치제 실시를 연기하는 법령이었다.

제2차 개정은 1956년 2월 13일 법률 제385호로 개정되었다. 이 2차 개정은 1952년부터 1956년까지 지방자치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민주성을 지향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과 자치권 행사를 축소시켜 중앙집권의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제3차 개정은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88호로 개정하였다. 이때 제2차 개정을 보완하는 소폭 개정으로 시행착오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통제를 강화하였고, 민주화를 기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4차 개정은 1958년 12월 26일 법률 제501호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자유당정권의 1960년의 선거를 의식하여 여당계 인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후퇴와 중앙집권의 관치화를 유발시켰다.

제5차 개정은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동년 11일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직선제로 환원시키는 등 제2공화국에서 민주주의제도의 확립과 지방분권 및 민권신장을 추구하였다.

제6차 개정은 1972년 유신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는 금기시되었다. 1973년에 정부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부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중 경찰서 설치 등의 관계조문이 폐지되었다.

제7차 개정은 1987년 10월 27일 제9차 개헌에 의해 제6공화국이 개정되고, 이 헌법에서 종래의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제약을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의 길을 열었고,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고, 동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여소야대로 정치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1988년 12월 약 3당은 독자적인 지방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약 3당의 합의에 의해 1989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8차 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여야 4당이 합의하여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제9차 개정은 30년만의 지방의회의 부활을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제10차 개정은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는 과정에서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다. 제11차 개정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제12차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 실시한다고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법」은 12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 선 거

1) 제1차

이 선거는 우리 나라 현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으로 2년이나 연기되어 시행된 이 선거는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와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지역은 제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 실시된 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실시된 선거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며 민주주의의 욕구와 대의정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서울특별시장·도지사·군수는 임명에 의하고, 시·읍·면장은 1952년 4월 25일, 도의원은 5월 10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였다. 당시의 선거결과는 한국전쟁의 혼란과 함께 실시되어 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제2차

1956년 8월 8일 시·읍·면장과 시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13일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회의원들의 제2차 지방자치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제1차 선거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제2차와 3차에 걸쳐 개정·실시하였다. 서울특별

시장과 각 도지사·군수는 종전과 같이 임명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나, 시·읍·면장은 종전 지방의회에서 간선에 의해 선출하던 것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 지방의원들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다.

제2대 경기도의회의원 당선자는 총 45명으로 자유당 14명, 민주당 22명, 국민회 1명이었다. 그러나 자료의 미비로 남면(시흥군)의 당시 선거상황은 알 수가 없다.

3) 제3차

지방자치법은 1958년 12월에 제4차 개정을 하였다. 이번 개정은 자유당 정권이 1960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임명제로 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를 관치로 변질시킨 최악의 개정이었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장면정권이 출범한 가운데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이 구성된 국회는 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직선제로 환원하는 등 가능한 민주화의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제5차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60년 12월 12일 서울시와 도의원선거를, 12월 15일에는 시·읍·면의원선거를, 12월 26일에 시·읍·면장선거를, 12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선거를 각각 실시하였다. 즉 장면 정권은 시·읍·면의 완전한 자치화로 이른바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실정과 같등은 결국 자치단체가 구성된 지 불과 5개월만에 5·16 쿠데타에 의해 제대로 지방자치의 경험도 쌓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의 선거결과는 〈표 68〉과 같다.

〈표 68〉 제3차 경기도 지방자치선거 상황

구 분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 권	투표율 (%)	선거일
		유 효	무 효	계			
도의회의원	1,240,840	744,821	35,817	780,638	460,202	62.9	60. 12. 12
읍의원선거	114,340	70,895	1,636	72,531	41,809	63.4	60. 12. 19
면의원선거	921,649	668,203	13,454	681,657	239,992	74.0	60. 12. 19
시의원선거	219,988	124,681	3,030	127,711	92,277	58.1	60. 12. 19
시장선거	220,758	112,872	3,306	116,178	104,580	52.6	60. 12. 26
읍장선거	115,385	70,279	2,568	72,847	42,538	63.1	60. 12. 26
면장선거	923,401	666,082	22,741	698,823	234,578	75.7	60. 12. 26
도지사선거	1,254,453	391,728	19,620	411,348	843,105	32.8	60. 12. 26

자료 :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행정총람』, 528~548면.

4) 제4차

1991년 3월 26일 전국에서 4,304명을 뽑는 기초의원선거가 동년 6월 20일 전국에서 모두 866명의 시·도광역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30여 년만에 빛을 보게되었다. 3월 26일 선거는 전체 투표율 55%로 저조하였지만, 당초 예상과 같이 여당당적을 갖거나 관변단체 관계자 등 친여 성향의 인사가 거의 당선돼 여대야소 현상을 입증했다.

6월 20일 실시된 시·도광역의원선거는 전국 투표율 59%를 보인 가운데 정당 추천제로 실시되어 전국의원 정수 866명 중 65%인 564명을 민자당이 차지했다. 신민당은 121명, 민주당은 21명, 민중당 1명이고, 무소속이 의외로 선전하여 115명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제14대 총선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시되어 여·야가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강경대군의 치사사건’과 ‘정원식 전 총리의 외국어대학 봉변사건’ 등이 엉뚱하게 안정 회구로 선회하여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투표율은 경기도 평균 52.2%인데, 비해 군포시는 48.0%로 저조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 사상 유례없는 현상은 주민의 행정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선거결과는 〈표 69〉, 〈표 70〉과 같다.

〈표 69〉 기초의원선거 결과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 선 자	
								득표수	득표수
군포1동	16,809	7,427	7,278	149	9,382	44.2	4	유지연 (3,079)	백남규 (2,156)
군포2동	7,056	3,891	3,823	68	3,168	55.1	3	김경환 (1,920)	
당정동	3,947	2,158	2,072	86	1,789	54.7	2	이세종 (1,043)	
산본1동	14,278	7,390	7,265	125	6,888	51.8	5	이재권 (2,525)	배연자 (1,862)
산본2동	5,879	2,822	2,763	59	3,057	48.0	3	김치년 (1,153)	
금정동	19,798	8,824	8,667	157	10,974	44.6	4	노재영 (2,575)	송윤석 (2,460)
계	67,770	32,512	31,868	644	35,258	48.0	21		9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총람』, 326~327면.

〈표 70〉 시·도 광역의원선거 결과

선 거 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 선 자	
								득표수	소속
제1선거구	23,557	13,369	13,171	198	10,188	56.8	3	유정남 (5,363)	민주 자유당
제2선거구	24,042	13,771	13,602	169	10,271	57.3	4	이재용 (5,062)	시민주 연합당
제3선거구	20,384	12,787	12,636	151	7,597	62.1	7	임정순 (2,904)	무소속
합 계	67,983	39,927	39,409	518	28,056	62.7	14		3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총람』, 232~233면.

5) 제1회 4대지방선거



유세현장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선거는 광역단체장,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선거를 4대지방선거라고 일컫는다. 이 선거는 3당 합당 후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집권당을 만들고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된 후 1995년 3월 30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김종필이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이른바

‘3김의 부활전쟁’이었다.

이 지방선거는 민자당의 세대교체론 민주당의 등권론, 자민련의 핫바지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갈등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3김 사이의 노골적 정치싸움과 반 3김 라인의 첨예한 대결로 정치불안과 부작용이 속출되면서 동시선거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또한 영·호남과 충청권의 대결의 양상은 지역감정은 물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대결, 개혁과 보수의 대결로 집약되었다.

결과는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참패하였고,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승리였다.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면, 15개 의석 중 민자당 5석, 민주당 4석, 자민련 4석, 무소속 2석으로 현정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탄생하였다. 기초단체장선거는 무투표 당선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민자당이 30.8%로 71석, 민주당은 36.5%로 84석, 자민련은 10%인 23석, 무소속이 22.7%인 52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광역의원선거에서도 민자당이 30%인 250명, 민주당과 자민련은 70%인 584명이나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출범 2년 4개월 된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표이며,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현상이었다. 당시 선거결과는 〈표 71〉, 〈표 72〉, 〈표 73〉, 〈표74〉와 같다.

〈표 71〉 경기도지사선거 결과

구시군 위원회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유효 투표수)		
			이인제	장경우	김문원	임사빈			
군포시	151,165	95,544	41,246	30,261	8,260	14,288	94,055	1,489	55,621
경기도	5,043,054	3,188,871	1,264,914	923,069	316,637	613,624	3,118,244	70,629	1,854,183
비율 (%)	군포시	63.2	43.8	32.2	8.8	15.2	98.4	1.6	36.8
	경기도	63.2	40.5	29.6	10.9	19.7	97.8	2.2	36.8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365면.

〈표 72〉 시장·군수선거 결과

시군별	선거 인수	투표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유병직	조원극	이강원	김영재	백남규	이철우	계(유효투표수)		
군포시	151,165	95,538	23,754	28,274	7,548	16,124	6,055	12,191	93,946	1,592	55,627
비율 (%)		63.2	25.3	30.1	8.0	17.2	6.4	13.0	98.3	1.7	58.2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498~499면.

〈표 73〉 도의회의원선거 결과

선 거 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 선 자	
								득표수	소 속
제1선거구	30,573	19,455	18,772	683	11,118	63.6	2	한기태 (9,421)	민주당
제2선거구	57,849	35,617	34,543	1,074	22,232	61.6	2	조치영 (20,715)	민주당
제3선거구	62,743	40,511	39,640	871	22,232	64.6	4	백일산 (16,421)	민주당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710~713면.

〈표 74〉 시·군의회의원 선거 결과

선 거 구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	무효투표	기권수	투표율	후보자수	당 선 자	
								득표수	득표수
군포1동	16,487	10,024	9,687	337	6,463	60.8	6	권원혁 (2,260)	박윤호 (2,259)
군포2동	8,317	5,550	5,399	151	2,767	66.7	3	석부훈 (2,155)	
당정동	2,715	1,697	1,630	67	1,018	62.5	2	이세중 (1,047)	
산본1동	13,255	8,219	8,036	183	5,036	62.0	3	이재권 (3,147)	
산본2동	14,820	9,637	9,391	248	5,183	65.0	5	이원남 (2,808)	임용순 (2,043)
금정동	13,884	8,020	7,806	214	5,864	57.8	4	최진학 (2,515)	박윤서 (1,969)
재궁동	18,447	11,083	10,822	261	7,364	60.1	5	노재영 (2,582)	김영숙 (2,391)
오금동	16,433	11,114	10,902	212	5,319	67.6	3	손영선 (3,934)	김제길 (3,581)
수리동	13,069	9,004	8,791	213	4,065	68.9	4	방상익 (3,347)	장후동 (3,145)
궁내동	무 투 표 당 선						2	유삼종	권순태
광정동	15,890	9,741	9,443	298	6,149	61.3	3	김주삼 (4,837)	김진용 (3,040)
대야동	3,054	2,178	2,122	56	876	71.3	3	송만용 (866)	

자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871~875면.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와 지구당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1.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9인)가 있고, 도 단위를 선거구로 하는 도선거관리위원회(9인)가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시선거관리위원회(9인)가 있다. 또한 동에는 투표업무를 수행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7인)가 설치되어 있다. 군포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군포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군포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은 <표 1>과 같다.

<표 1>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 위	성 명	연령	직 업	주소 또는 근무처
위 원 장	이상주	35	수원지법판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 삼성2차(아) 6동1302호
부위원장	정봉구	63	화산초등학교교장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심환(아) 103-203
"	송요태	56	삼일화학(주)	군포시 산본동 1088 목련(아) 1204-1201
"	이홍주	44	제일상사대표	군포시 당동 738-25
"	황광수	55	법 무 사	군포시 산본동 1146 솔거대림(아) 736-801

직 위	성 명	연령	직 업	주소 또는 근무처
”	강은석	50	진우강업(주) 대표	군포시 당동 783-1
”	연병탁	67	공인중개사	군포시 산본동 1146 솔거(아) 733-302
”	김광현	68	개인사업	군포시 당동 835-53
”	안필수	42	(주) 청송대표	군포시 수리동 계룡(아) 834-1401

1) 구 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구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2) 주요 업무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②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 ③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④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 ⑤ 인사 서무에 관한 사항
- ⑥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2. 투표구

군포시의 각 동에 설치된 투표구는 74개소이다. 군포1동 7개 군포2동 6개, 당정동 2개, 산본1동에 8개, 산본2동 8개, 금정동 6개, 재궁동 8개, 오금동 7개, 수리동 7개, 궁내동 6개, 광정동 8개, 대야동 2개소 등이 각각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투표구는 지역적인 여건 변화와 인구의 증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여 투표사무 진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개표장면

3. 선거구

1) 도의회의원

군포시의 도의원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되어 있다. 제1선거구는 군포1동·군포2동·당정동·산본1동·금정동·대야동 등 6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제2선거구는 산본2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재궁동 등 6개 동이다.

2) 국회의원과 시장

시장선거구는 군포시 일원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다.

3) 시의회의원

시의회의원선거구는 11개 선거구로 확정되어 있다. 군포1동 선거구는 군포1동과 당정동, 군포2동 선거구는 군포2동, 산본1동 선거구는 산본1동, 산본2동의 선거구는 산본2동, 금정동 선거구는 금정동, 재궁동 선거구는 재궁동, 오금동 선거구는 오금동, 수리동 선거구는 수리동, 궁내동 선거구는 궁내동, 광정동 선거구는 광성동, 대야동 선거구는 대야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거구는 인구의 변동과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지구당

1. 현 황

1) 한나라당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자 기존 정당들은 헌법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해산되었다. 이후 1980년 11월 22일에 정치활동 및 정당창설이 허용되어 정가에서는 신당 창당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5공화국의 주도세력들이 1980년 12월 9일 창당준비대회를 거쳐 1981년 1월 15일에 창당한 민주정의당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2월 15일에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총재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총재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총재 등이 합당을 하여 당을 개편하고 당명을 민주자유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자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당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정치풍토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을 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세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합당을 하여 대통령선거전에 임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구당도 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로 승격당시인 1989년에는 지구당위원장이 황철수의원이었고, 그 후에는 원외지구당으로 이철규위원장이 지구당을 운영하였고, 이어 강창웅위원장이 당을 운영하다가 1998년 5월 14일에 개편대회를 통하여 김부겸위원장이 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구당의 사무실은 군포시 광정동 1140-1, 계정빌딩 801호에 위치하고 있다.

2)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는 평화민주당 총재인 김대중이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함에 따라 일시 정계를 은퇴하였다가 2년만에 정계 복귀로 평화민주당 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된 유선후가 1996년 1월 5일에 군포시 지구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피선되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에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치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선거홍보로 지역에서 김대중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므로써 당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한 4대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당선은 물론 도의원(정원 2명)을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구당 사무실은 군포시 산본1동 224-9에 위치하고 있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1990년 2월 15일 3당 합당 후 문민정부시대에 민자당 대표위원으로 있던 김종필이 당내의 갈등과 내분으로 탈당 후 민자당을 탈당한 세력들이 규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군포시 지구당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구당 조직책으로 심양섭이 임명되어 1995년 10월 24일 창당하였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지구당 위원장인 심양섭이 출마하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열전을 하였으나, 국회에 진출하는데는 실패하고 원외 지구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 중이다. 이는 1998년 6월 4일 실시한 4대지방선거에서 지구당 위원장인 심양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선거에 당의 공천으로 출마하여 하였으나, 새정 치국민회의와 연대관계로 중앙당의 공천을 밖지 못하자 탈당을 하여 출마하는 관계로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다. 군포시의 지구당 사무실은 군포시 광정동 1139번지 거성2차빌딩 504호에 위치하고 있다.

4) 국민신당

국민신당은 1997년 12월 16일에 실시하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의 대 통령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이인재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신 한국당을 탈당한 세력을 규합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이인재 후보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서 국민신당의 후보로 세대교체론과 삶은 폐기의 자도자문을 강조하며 열전을 하였으나, 당선에 실패하고 그의 지지도는 3위에 그치고 말았다.

군포시 지구당은 1998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도의회의원을 사임하고 지구당 조직체를 임명받아 국민신당의 시장후보로 출마한 백원산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낭선에 실패한 후에 1998년 6월 12일 창당하였다. 지구당은 군포시 산본동 1128번지 금성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다.

5) 군소 정당

군포시 관내에 군소정당의 지구당으로는 국민승리21의 군포시 지구당(위원장 조완기) 사무실이 금정동 713-5에 위치하고 있고, 통일한국당 군포시 지구당(위원장 심무섭) 사무실이 산본1동 83-4, 원일연립 A-107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참여 하였을뿐 지역 기반이 약하고 당세의 확장에 한계가 있어 그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한 4대 지방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2. 선거참여

군포시로 승격하기 이전의 각 지구당의 활동상황은 1988년에 발행한 시흥군지에 수록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군포시로 승격한 이후인 1989년부터 각 정당의 선거 참여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91년 도의회의원선거

시로 승격한 후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도의원 선거에는 민자당 신민주연합이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자당 공천자인 유정남과 신민주연합이 공천한 이재룡, 무소속의 임정순이 당선되었다.

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1992년 3월 24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통일민주당, 신정당, 민중당 등 5개당이 공천을 하여 선거에 참여한 결과 민주당 공천자인 제정구가 당선되었다.

3) 제14대 대통령선거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선거로써 민자당의 김영삼후보, 민주당 김대중후보, 국민당 정주영후보, 신정당 박찬종후보, 대한정의당 이병호후보, 무소속 김옥선후보, 배완기후보 등이 열전을 하였으나 군포시의 결과는 군포시의 투표자 66,919표 중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35.8%인 23,934표, 민주당의 김대중후보가 36.5%인 24,451표를 획득하였으며, 기타 정당 공천자는 지지도가 극히 저조하였다.

4) 제1회 4대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 4대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을 제외하고, 지구당에서 공천을 한 도의원(정원 3명)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당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민주당이 공천한 한기태후보, 조치영후보, 백일산후보 등 3명이 모두 당선을 하였고, 민주자유당은 참패하였다.

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이 공천을 하고 그 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민주당이 공천한 조원극후보가 당선을 하였다.

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통합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및 무당파국민연합등 5개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 유선후보가 당선되었다.

6)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구를 단위로 하는 선거로서 한나라당 이희창후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 국민신당 이인제후보,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공화당 허경영후보,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후보,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등 7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과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후보가 군포시 전체유효투표의 41.13%인 59,056표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한나라당의 이희창후보가 38.29%인 54,980표를 획득하였으며,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극히 적은 지지도를 획득하였다.

7) 제2회 4대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한 제2회 4대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을 제외한 도의원(정원 2명)에서는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에서 공천을 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공천한 한기태후보와 김주삼후보가 당선되었고, 한나라당은 참패하였다.

또한 동일 실시한 시장선거는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국민신당이 각각 자당후보를 공천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 등 4명이 열전을 하였으나, 국민회의 공천자인 김윤주후보가 당선하였다.

〈김성영〉

〈참고문헌〉

- 광동서관편집부 편, 『한국행정구역편람』, 광동서관, 1979.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2권』, 1982.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편, 『경기도의회의원선거총람』, 199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편, 『구·시·군의회의원선거총람』, 1991.
-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4.
- 김호진, 『한국정치체계론』, 박영사, 1997.
- 사법행정문화원 편, 『1990 신지방행정편람』, 사법행정문화원, 1990.
- 시흥군사편집위원회 편, 『시흥군지』, 1988.
- 안병만, 『한국정치론』, 다산출판사, 1997.
-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6.
- 안재희,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1945-1995』, 한국기자협회, 1995.
- 윤정석외 2인,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5.
-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편, 『행정편람』, 1994.
- 김성영, 「역대 국민투표가 대통령 직접선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오산대학 논총』18, 1998.
- 김용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한국의 선거』, 199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1996.
- 동아일보사, 『현대한국를 뒤흔든 60대 사건』, 신동아 별책부록, 198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81·1983·1985.
- 국회 중언편찬실, 『국회의 중언』, 1985.